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2)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 국민계정체계 및 법체계 적용을 중심으로 -

연구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 속 재
운 소 영

목 차

I. 서론	10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3
가.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요구	103
나. 주부의 무보수 노동 및 가사노동의 법 적용 문제	104
다.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객관적 자료:“1999 생활시간조사” ..	104
2. 연구의 목적	105
II. 연구방법	106
1. 조사도구 및 대상	106
2. 변수의 정의	108
3. 분석방법	109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1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1
2. 가사노동의 시간사용실태	114
3.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117
가.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117
나.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국민총생산	120
4. 정책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과 주부지위 개선방법	134
가. 사보험과 노동력상실권	134
나. 부부재산권과 재산분할청구권	141
다. 국민연금과 주부의 연금수급권	153
IV. 결과 및 제언	163
참고문헌	173
부 록 구체적인 가사노동 가치평가 산정 내용	178

표 목차

<표 1> 각국의 시간사용조사의 자료수집방법	107
<표 2> 총노동시간의 내용	108
<표 3> 여성집단의 일반적 특성	112
<표 4> 남성집단의 일반적 특성	113
<표 5> 혼인상태, 취업상태에 따른 영역별 가사노동 시간	115
<표 6> 각국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	118
<표 7> 각국의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119
<표 8>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 행동분류와 대체직업 선정	121
<표 9> 대체직업의 시간당 평균임금	125
<표 10> 전 직종의 연령별 시간당 임금을	129
<표 11> 평가방법별 월 가사노동 가치	130
<표 12> 가사노동의 총 평가액과 대(對) GDP 비율	133
<표 13> 여성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요일별	136
<표 14> 남성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요일별	136
<표 15> 여성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연령별	138
<표 16> 재산분할청구권 적용 판례	143
<표 17> 연령별 총노동시간	145
<표 18> 가정내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 비율 : 연령별 분석	146
<표 19> 자산 및 부채 측정방법	150
<표 20>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등급	155

그림 목차

<그림 1>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114
<그림 2>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116
<그림 3> 50세 이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 추이	139
<그림 4> 주부의 노동력 상실 수익액 산정 과정	141
<그림 5> 부부재산의 잉여반분액 산정 과정	15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요구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그것이 무보수로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인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마저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을 하는 인간 주체의 경제적인 기여도와 사회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쳐, 가사노동 담당자의 일은 '노동'의 의미보다는 단지 가족원을 위한 '사랑, 봉사, 헌신'의 차원에서 언급된다. 예를들어 사보험 회사들은 사망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근거로 노동자의 노동상실 수익액을 산정하는데, 이 때 노동의 개념이나 직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주부를 실제 소득이 없는 무직자로 간주한다.

이와같이 노동시장통계와 국민소득계정에서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는 1970년대 이래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Boserup(1970), Weinerman & Lattes(1981), Beneria(1982), Dixon-Mueller & Anker(1988), Folbre & Able(1989), UN(1989)의 연구활동은 이러한 통계적 정보가 잘못된 사실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마침내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5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 199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에서도 무보수 가사노동을 국가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이에 우리 나라는 1997년 수립한 1998-2002년까지의 '제 1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세분화하여 조사표를 보완하며",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을 위해 가사노동량 파악을 위한 생활시간활용조사를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며", "가사노동가치의 적용분야를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정무장관 제 2실, 1997)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주부의 무보수노동 및 가사노동의 법 적용 문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GNP 대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산출할 때는 기회비용법 또는 대체비용법을 모두 적용하여 “가사노동종사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는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사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적용시에는 시간사용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가치평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윤소영, 1998).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국민연금, 세법 등 개별정책은 그 목적과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적 측면에서 기여도를 평가하여 시장노동을 통한 소득부분과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통한 소득부분을 모두 고려한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고 그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서 독일 민법의 잉여청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미경, 1990). 보험의 경우는 노동력 상실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손실수익 산정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에는 시장대체비용법과 같은 ‘대체노동력 고용비설’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황병일, 1991).

이와 같이, 개별정책 사례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사례별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새로운 지표를 산출해야 한다.

다. 가사노동가치평가의 객관적 자료 : "1999 생활시간조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1999년 통계청에서는 대단위(전국 만 10세 이상 46,109명)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국규모의 대단위 시간조사연구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중 투입측정법-구체적으로) 시장 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은 시간사용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정무장관 제 2실, 1997)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와 노동력 관련 조사를 활용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연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가사노동담당자의 지위 개선을 위해 적합한 정책사례별 평가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객관화된 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시간조사자료와 노동력조사 자료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정책적용에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시간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15세 이상 남녀의 가사노동 참여 경향을 알아본다
- 나. 투입측정법의 전문가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그리고 기회비용법을 이용하여 GNP내에서 가사노동 가치평가 비율을 추정한다.
- 다. 부부의 재산권, 주부의 노동상실권, 주부의 국민연금 수급권 등에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실태와 주부의 지위 수준을 알아본다.
- 라. 위의 각 정책별로 가능한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을 분석한다.
- 마.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을 산정 하는데 필요한 변인들을 찾아내어, 정책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및 대상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1999년 9월에 조사된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외에 1999년 7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의 1999년 [경제활동인구연보]의 1차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는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국민계정에 가계부문 생산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사되었으며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10분 간격의 after-coded 방식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와 주택의 종류, 입주형태, 미취학아동 보육여부 등의 가구관련사항 및 성별, 나이, 교육, 혼인상태 등을 보여주는 인구학적 특성, 일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관련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본은 계통추출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조사구 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2,029개와 보통조사구에서 추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용 조사구 1,231개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사용하였다. 850개의 표본조사구에서 가구번호순으로 20가구씩을 선정하여 각 가구 내에서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하여 최종 응답한 개인은 42,973명이며, 이들의 2일간 시간을 기록한 시간사용일지(85,906일)가 코딩되었다.

< 표 1 >은 한국 통계청(1999)의 “생활시간조사”와 OECD 국가들의 최근 보고된 시간사용조사의 자료수집 방법을 비교해서 정리한 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사용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사용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장에서의 지위, 자녀 수, 가계내 성인의 수 등-이 포함되어 조사되며, 따라서 조사된 단위는 1인 개인보다는 가계수준이 측정될 수 있는 전체 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표 1 > 각국의 시간사용조사의 자료수집방법

국가명	년도	샘플 수	연령	일수	코딩 방법	조사 기간	활동시간대 단위
한국	1999	1,700가구	10세 이상	2일	사후코딩	5년에 1번	10분
오스트레일리아	1992	4,400가구	15세 이상	2일	사후코딩	1년에 4번	5분
오스트리아	1992	23,000가구	10세 이상	1일	사후코딩	1년에 2번	낮:15분/밤:30분
캐나다	1992	9,000가구*	15세 이상	1일	사후코딩	1년 전체	자유 기록
덴마크	1987	3,577명	16-74세 이상	1일	사전코딩	3월	15분
핀란드	1987-88	10,574명	10세 이상	2일	사후코딩	1년 전체	낮:10분/밤:30분
프랑스	1985-86	16,047가구**	15세 이상	1일	사후코딩	1년 전체	5분
독일	1991-92	7,200가구	12세 이상	2일	사후코딩	1년 4번	5분
이탈리아	1988-89	19,728가구	3세 이상	1일	사후코딩	1년 전체	자유 기록
네델란드	1988	7,434가구	12세 이상	2일	사전코딩	1년 전체	15분
뉴질랜드	1990(pilot)	627가구	12세 이상	2일	사후코딩	8월	5분
노르웨이	1990-91	4,862가구	16-79세 이상	2일	사후코딩	1년 전체	낮:10분/밤:30분
스웨덴	1990-91	5,300가구	20-65세 이상	2일	사후코딩	5월 9월	10분
일본	1996	270,000명	10세 이상	2일	사전코딩	5년에 1번	자유기록

* 1가구당 1명만 조사.

** 1가구당 1-2명 조사.

출처 : 통계청(1999), OECD National Accounts(2000), Mikami(1999)

본 연구는 한국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에서, 연구 목적에 맞도록 경제활동인구¹⁾로 간주되는 만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 78,576개의 시간일지기록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1) 1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됨. 이때 경제활동인구라 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포함하며, 비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자를 말함(노동부, 2000)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통계청의 [시간사용조사]에서 제시된 행동분류체계(대분류 9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25개) 중 가사노동시간과 직업노동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한 것을 총노동시간으로 사용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기타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 모두를 합산한 시간량을 가사노동 전체 시간량으로 보았다. 직업노동시간은 통계청의 코딩북을 기준으로 주업, 부업,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집에 가져와서 일함, 그 외 일 관련 행동, 무급가족 종사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 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 관련 행동 변수를 합산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노동시간에는 무급가족 종사일이나 구직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취업여성의 경우 비록 현재 직업은 없으나 부업 및 무급가족 종사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노동시간은 0값이 아닌 그 이상의 수치로 나타낼 수도 있다. 총노동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 표 2 > 총노동시간의 내용

분 류		내 용	
총 노동 시간	가사 노동 시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기타의 가사노동	식사준비+설거지, 식후정리+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세탁 및 세탁물 널기+옷정리+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의류수선+세탁서비스받기+재봉, 뜨개질 방·물품정리+집안청소+그 외 청소 및 정리+가재도구·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세차,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그 외 집관리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신체적 돌보기,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기타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초, 중, 고등학생 보살피기(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숙제·공부 봐주기, 선생님과 상담·학교방문, 기타 학생 보살피기)+배우자 보살피기+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그 외 가족 보살피기 시장보기+쇼핑하기+내구재 구매관련 행동+가계부정리+가정계획+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기타 가사일+가정관리 관련이동+가족보살피기 관련이동
	직업 노동 시간	주업+부업+일 중 휴식+일 관련 연수+집에 가져와서 일함+그 외 일 관련 행동+무급가족 종사일+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구직활동+일관련 물품구입+기타 일 관련 행동	

출처 :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한편, 가사노동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문유경, 2001; 조희금, 1998; 이기영 외, 1997; 김정희, 1994)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김태홍, 2001; 김정희, 1994; 김선희, 1991; 정영금, 1989)에서 성별, 연령, 취업유무, 결혼지속년수 등이 유의한 변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은 혼인상태 및 배우자유무와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5개의 집단으로, 남성은 혼인상태와 배우자유무를 기준으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

3. 분석방법

응답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집단의 교육수준, 연령, 경제활동여부, 직장에서의 지위, 쉬는 날, 주택종류, 입주형태, 미취학자녀 유무 등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여성과 남성의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의 영역별 및 전체 사용시간의 빈도를 통해 응답집단의 가사노동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GNP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투입측정법과 기회비용법을 통해 평가방법별 가사노동 가치의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추정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이를 통해 평가방법별로 대(對) GDP 비율을 산정하였다.

정책별로 가능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별 가사노동 가치평가 실태와 주부의 지위 수준을 파악, 그 산정을 위한 적합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인들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과정을 도출하였다.

주부의 노동상실권의 경우, 사보험제도에서 주부의 노동상실수익액 산출시 요구되는 월근무일수와 정년년한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요일 및 연령별 가사노동시간량을 파악하여 주부의 노동력 상실수익액을 추정하였다. 부

2) 남성의 경우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배우자 유무가 그들의 가사노동시간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집단만 구분하였다.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부의 재산권의 경우, 가정내 부부의 노동분담율을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총노동시간 비율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적절하고 객관적인 재산분할액 산정과정을 제시하였다. 주부의 국민연금 수급권의 경우는 임금적용 방법에 따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액을 산정하여 표준소득월액을 산정하였으며,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주부에게 적합한 분할연금액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분석 과정에는 SAS 통계 프로그램(Ver. 6.12)이 이용되었으며, 빈도, 비율, 평균,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추후비교 검증방법을 통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 <표 4>와 같다.

조사대상 표본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별, 혼인상태 및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여성표본의 경우, 미혼집단(여성 I집단; 9,566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취업집단(여성 II집단; 13,821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미취업집단(여성 III집단; 11,967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취업집단(여성 IV집단; 2,982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미취업집단(여성 V집단; 3,717표본)의 5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우, 학력은 고졸(33%)이 연령은 20-3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경제 활동은 취업과 미취업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졌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I집단이나 II 또는 III집단은 고졸이 가장 많은 반면, IV집단은 48%정도, V집단은 66%정도가 무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IV와 V집단의 약 50% 이상이 60대 이상의 연령대인 것으로 보아 기혼 무배우 집단에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 여성이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54%), 무급가족종사자(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는 59%였고 기혼여성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26%이었다.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에 따라 미혼집단(남성 I집단; 10,749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집단(남성 II집단; 24,618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집단(남성 III집단; 1,156표본)의 3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약 37%)이 연령은 30-40대가 약 43%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남성(약 72%)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60%), 자영업자(약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 > 여성집단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범주	미혼여성 (I)		기혼유배우 취업 (II)		기혼유배우 미취업 (III)		기혼무배우 취업 (IV)		기혼무배우 미취업 (V)		계
		N	%	N	%	N	%	N	%	N	%	N (%)
교육 수준	무학	40	0.42	1526	11.04	863	7.21	1422	47.69	2468	66.40	6319(15.03)
	초등졸	466	4.87	3313	23.97	1721	14.38	788	26.43	797	21.44	7085(16.85)
	중졸	2784	29.10	2878	20.82	1950	16.29	312	10.46	194	5.22	8118(19.30)
	고졸	3026	31.63	4611	33.36	5653	47.24	380	12.74	226	6.08	13896(33.04)
	초대졸	2307	24.12	636	4.60	772	6.45	32	1.07	20	0.54	3767(8.96)
	대졸이상	943	9.86	857	6.20	1008	8.42	48	1.61	12	0.32	2868(6.82)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연령	10대	4315	45.11	12	0.09	32	0.27	0	0.00	0	0.00	4359(10.37)
	20대	4701	49.14	1136	8.22	2134	17.83	30	0.01	18	0.48	8019(19.07)
	30대	426	4.45	4319	31.25	3966	33.14	218	7.31	60	1.61	8989(21.38)
	40대	88	0.92	4185	30.28	2502	20.91	534	17.91	158	4.25	7467(17.76)
	50대	20	0.21	2463	17.82	1788	14.94	658	22.07	400	10.76	5329(12.67)
	60대 이상	16	0.17	1706	12.34	1555	12.91	1542	51.71	3081	82.89	7890(18.76)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경제 활동 여부	유	4095	42.81	13821	100.0	0	0.00	2982	100.0	0	0.00	20898(49.69)
	무	5471	57.19	0	0.00	11967	100.0	0	0.0	3717	100.0	21155(50.31)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직장 에서의 지위	임금근로자	3683	89.94	6351	45.95	-	-	1336	44.80	-	-	11370(54.41)
	고용주	30	0.73	275	1.99	-	-	88	2.95	-	-	393(1.88)
	자영업자	138	3.37	2351	17.01	-	-	1126	37.76	-	-	3615(17.30)
	문급가족 종사자	244	5.96	4844	35.05	-	-	432	14.49	-	-	5520(26.41)
	계	4095	100.0	13821	100.0	-	-	2982	100.0	-	-	20898(100)
쉬는 날*	일주일 하루	2344	60.87	3782	42.13	-	-	604	23.69	-	-	6730(43.76)
	토요일 격주휴무	268	6.96	298	3.32	-	-	40	1.57	-	-	606(3.94)
	일주일 이틀	398	10.33	590	6.57	-	-	128	5.02	-	-	1116(7.26)
	매2주 하루	218	5.66	679	7.56	-	-	184	7.22	-	-	1081(7.03)
	정해진 휴일 없이 수시로	446	11.58	3438	38.30	-	-	1544	60.55	-	-	5428(35.30)
	기타	177	4.60	190	2.12	-	-	50	1.96	-	-	417(2.71)
	계	3851	100.0	8977	100.0	-	-	2550	100.0	-	-	15378(100)
주택 종류	단독	5559	58.11	8582	62.09	5758	48.12	2294	76.93	2517	67.72	24710(58.76)
	아파트	2570	26.87	3173	22.96	4545	37.98	326	10.93	758	20.39	11372(27.04)
	연립주택	870	9.09	1134	8.20	1064	8.89	200	6.71	272	7.32	3540(8.42)
	다세대	334	3.49	414	3.00	390	3.26	56	1.88	94	2.53	1288(3.06)
	기타	233	2.44	518	3.75	210	1.75	106	3.55	76	2.04	1143(2.72)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입주 형태	자기집	6177	64.57	9550	69.10	7608	63.57	2085	69.01	2612	70.27	28005(66.59)
	전세	2081	21.75	2869	20.76	3235	27.03	478	16.03	643	17.30	9306(22.13)
	월세	1048	10.96	1164	8.42	844	7.05	364	12.21	336	9.04	3756(8.93)
	무상,사택	260	2.72	238	1.72	280	2.34	82	2.75	126	3.39	986(2.34)
	계	9566	100.0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42053(100)
미취학 자녀 유무	유	-	-	2985	21.60	4575	38.23	332	11.13	470	12.64	8362(25.74)
	무	-	-	10836	78.40	7392	61.77	2650	88.87	3247	87.36	24125(74.26)
	계	-	-	13821	100.0	11967	100.0	2982	100.0	3717	100.0	32487(100)

* 무응답으로 인해 총계는 동일하지 않음

< 표 4 > 남성집단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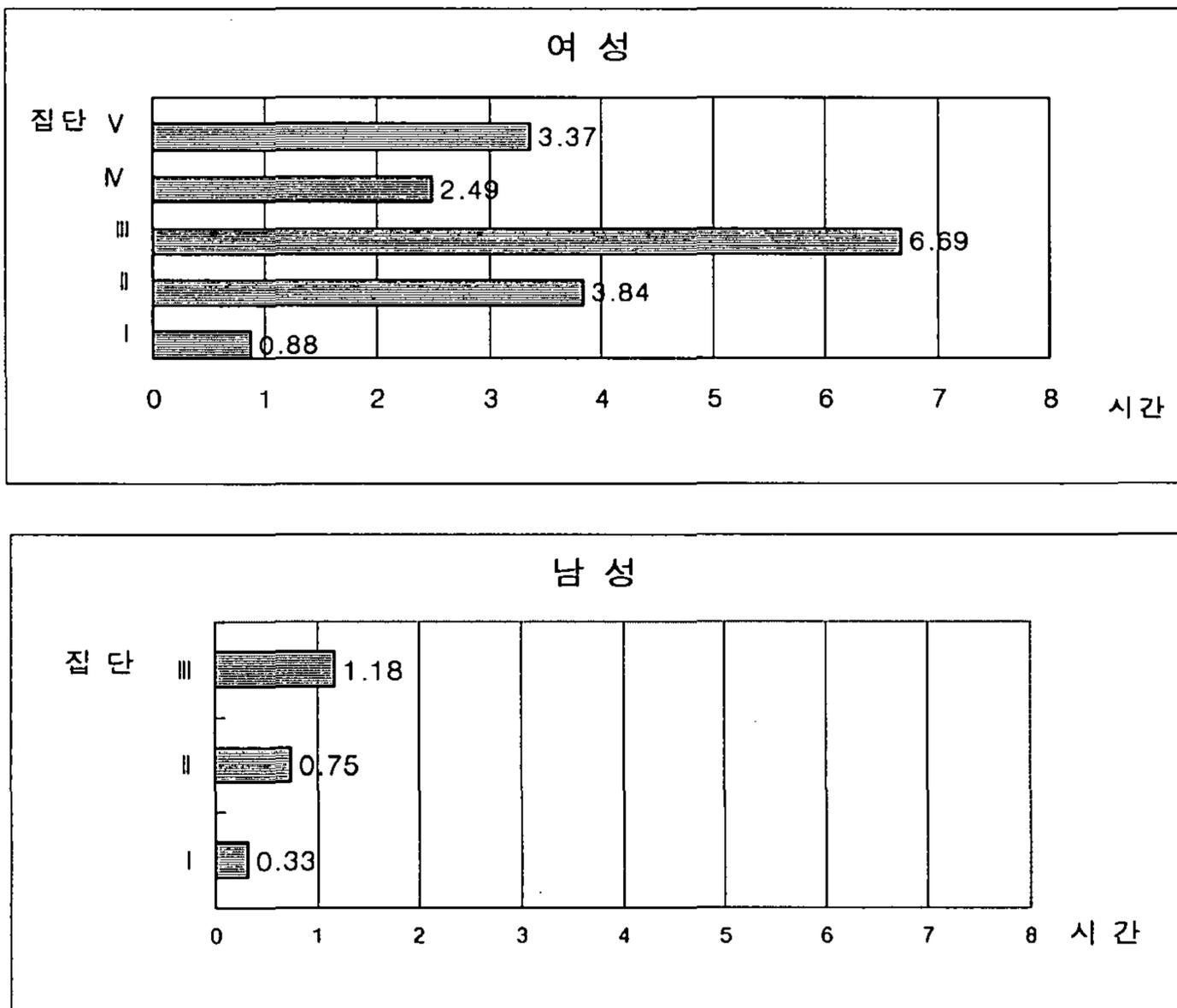
변인	구분	집단	미혼남성 (I)		기혼유배우 남성 (II)		기혼무배우 남성 (III)		계 N (%)
			N	%	N	%	N	%	
교육수준	무학		56	0.52	1354	5.50	266	23.01	1676 (4.59)
	초등졸		620	5.77	3703	15.04	306	26.47	4629 (12.67)
	중졸		3258	30.31	3811	15.48	204	17.65	7273 (19.91)
	고졸		3517	32.72	9717	39.47	274	23.70	13508 (36.98)
	초대졸		2265	21.07	1909	7.75	38	3.29	4212 (11.53)
	대졸이상		1033	9.61	4124	16.75	68	5.88	5225 (14.31)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연령	10대		4160	38.70	8	0.03	0	0.00	4168 (11.41)
	20대		5051	46.99	1342	5.45	14	1.21	6407 (17.54)
	30대		1306	12.15	7083	28.77	160	13.84	8549 (23.41)
	40대		184	1.71	6676	27.12	294	25.43	7154 (19.59)
	50대		42	0.39	4699	19.09	184	15.92	4925 (13.48)
	60대 이상		6	0.06	4810	19.54	504	43.60	5320 (14.57)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경제동여	유		4714	43.86	20837	84.64	670	57.96	26221 (71.79)
	무		6035	56.14	3781	15.36	486	42.04	10302 (28.21)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직장에서 의 위치	임금근로자		3779	80.2	11571	55.53	384	57.31	15734 (60.01)
	고용주		56	1.2	1386	6.65	20	2.99	1462 (5.58)
	자영업자		381	8.1	7428	35.65	212	31.64	8021 (30.59)
	문급가족 종사자		498	10.6	452	2.17	54	8.06	1004 (3.83)
	계		4714	100.00	20837	100.00	670	100.00	26221 (100)
쉬는 날	일주일 하루		2148	50.95	8751	42.93	176	28.57	11075 (43.92)
	토요일 격주휴무		290	6.88	1048	5.14	12	1.95	1350 (5.35)
	일주일에 이틀		208	4.93	732	3.59	32	5.19	972 (3.85)
	매 2주 하루만		362	8.59	1130	5.54	24	3.90	1516 (6.01)
	정해진 휴일없이 수시		934	22.15	7967	39.08	342	55.52	9243 (36.65)
	기타		274	6.50	757	3.71	30	4.87	1061 (4.21)
	계		4216	100.00	20385	100.00	616	100.00	25217 (100)
주거 형태	단독		6581	61.22	13806	56.08	838	72.49	21225 (58.11)
	아파트		2580	24.00	7318	29.73	166	14.36	10064 (27.56)
	연립주택		1000	9.30	2029	8.24	88	7.61	3117 (8.53)
	다세대		338	3.14	763	3.10	36	3.11	1137 (3.11)
	기타		250	2.33	702	2.85	28	2.42	980 (2.68)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입 주 형태	자기 집		6965	64.80	16413	66.67	668	57.79	24046 (65.84)
	전세		2144	19.95	5700	23.15	238	20.59	8082 (22.13)
	월세		1338	12.45	1939	7.88	202	17.47	3479 (9.53)
	무상, 사택		302	2.81	566	2.30	48	4.15	916 (2.51)
	계		10749	100.00	24618	100.00	1156	100.00	36523 (100)
미취 학 자 유 무	유		-	-	7098	28.83	150	12.98	7248 (28.12)
	무		-	-	17520	71.17	1006	87.02	18526 (71.88)
	계		-	-	24618	100.00	1156	100.00	25774 (100)

* 무응답으로 인해 총계는 동일하지 않음

2. 가사노동의 시간사용실태

15세 이상 여성과 남성의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의 시간사용 실태는 <그림 1>, <표 5>, <그림 2>와 같다. 1일 평균 총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혼(여성 I 집단)이 가장 짧은 0.88시간으로 나타났고,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미취업 여성(여성 III집단)이 6.69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취업여성(여성 II 집단; 3.84시간)과 기혼이면서 무배우자 미취업 여성(여성 V집단; 3.37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남성 III집단)이 1.18시간으로 미혼(남성 I집단; 0.33시간)이나 기혼 유배우자(남성 II집단; 0.75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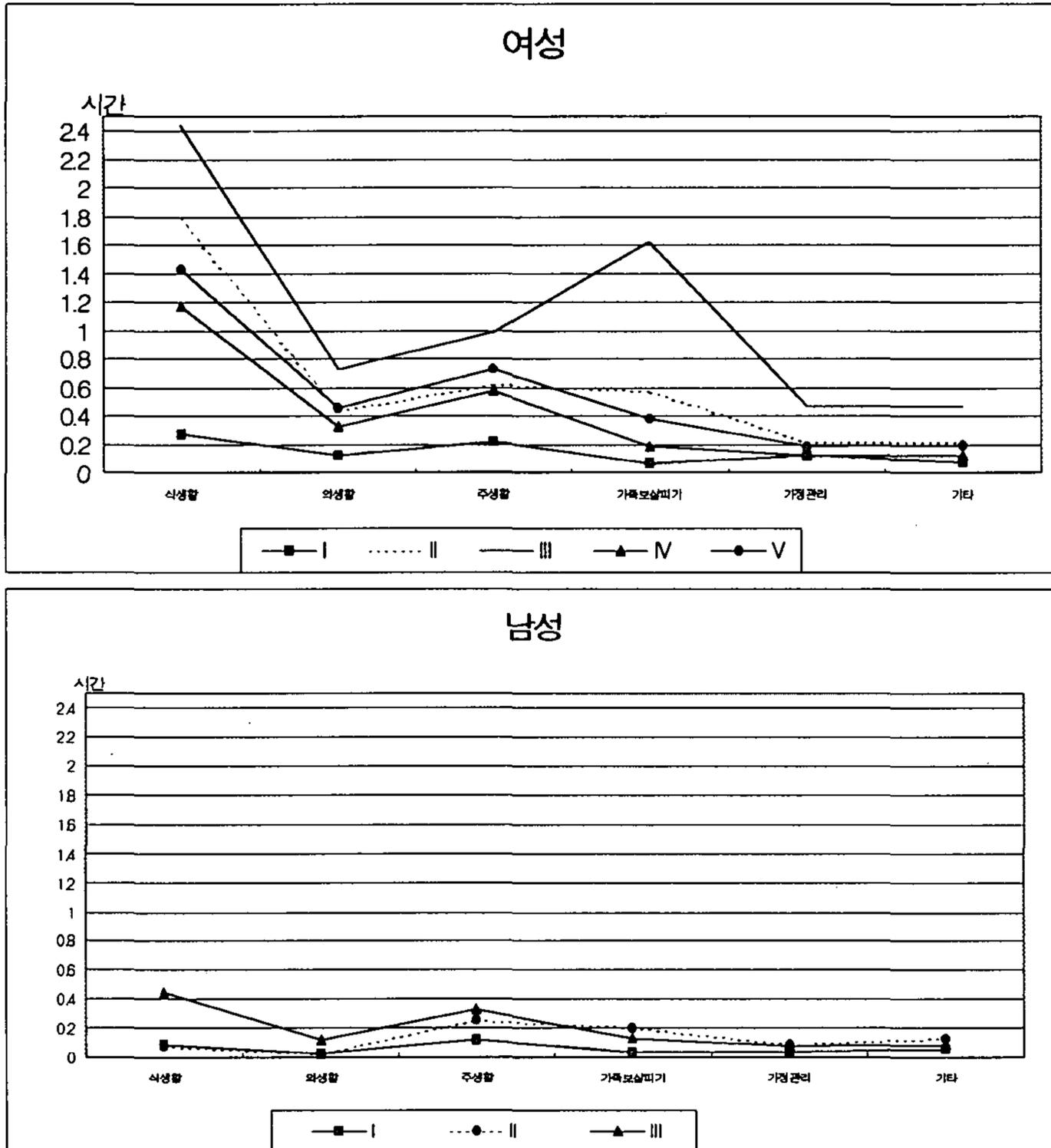
< 그림 1 >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 표 5 > 혼인상태, 취업상태에 따른 영역별 가사노동 시간(1일 평균)

(단위 : 시간)

영역	집 단	여 성					남 성		
		I	II	III	IV	V	I	II	III
411	식사준비	0.13	1.07	1.38	0.65	0.73	0.05	0.03	0.28
412	설거지, 식후 정리	0.12	0.52	0.72	0.33	0.43	0.03	0.02	0.15
413	간식, 저장식품 만들기	0.02	0.20	0.33	0.17	0.28	0.00	0.02	0.03
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0.08	0.32	0.47	0.25	0.30	0.02	0.00	0.08
422	옷 정리	0.02	0.07	0.12	0.05	0.10	0.00	0.00	0.02
423	다림질, 바느질 및 의류손질	0.02	0.03	0.07	0.02	0.03	0.00	0.00	0.02
424	의류수선 및 세탁 서비스 받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25	재봉, 뜨개질	0.02	0.02	0.05	0.00	0.02	0.00	0.00	0.00
431	방·물품 정리	0.08	0.12	0.17	0.10	0.12	0.05	0.03	0.07
432	집안 청소	0.12	0.37	0.58	0.28	0.37	0.03	0.03	0.12
433	그외 청소 및 정리	0.02	0.08	0.15	0.10	0.15	0.02	0.07	0.07
441	가재도구·집 손질 및 관련 서비스받기	0.00	0.02	0.02	0.02	0.02	0.02	0.05	0.03
442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0.00	0.00	0.00	0.00	0.00	0.02	0.02	0.02
443	그 외 집관리	0.02	0.02	0.07	0.07	0.08	0.02	0.05	0.05
511	신체적 돌보기	0.02	0.17	0.62	0.03	0.10	0.00	0.03	0.02
512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2	0.13	0.47	0.07	0.17	0.02	0.10	0.07
513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0	0.03	0.07	0.10	0.02	0.00	0.00	0.00
521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0	0.10	0.13	0.03	0.03	0.00	0.00	0.02
522	숙제, 공부 봐 주기	0.00	0.50	0.10	0.00	0.00	0.00	0.02	0.02
523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524	기타 학생 보살피기	0.00	0.02	0.02	0.00	0.00	0.00	0.00	0.00
530	배우자 보살피기	0.00	0.05	0.10	0.00	0.00	0.00	0.02	0.00
540	부모, 조부모 보살피기	0.02	0.02	0.00	0.00	0.02	0.02	0.02	0.00
550	그 외 가족 보살피기	0.02	0.03	0.07	0.02	0.05	0.02	0.02	0.02
451	시장보기	0.03	0.15	0.32	0.10	0.13	0.20	0.03	0.05
452	쇼핑하기	0.07	0.03	0.08	0.02	0.02	0.02	0.02	0.00
453	내구재 구매관련 행동	0.00	0.00	0.02	0.00	0.02	0.00	0.00	0.00
461	가계부 정리	0.00	0.02	0.03	0.00	0.00	0.00	0.00	0.00
462	가정계획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63	은행, 관공서 일보기	0.02	0.02	0.05	0.02	0.02	0.00	0.02	0.00
499/841/851	기타	0.08	0.22	0.47	0.12	0.20	0.05	0.13	0.09



< 그림 2 >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 실태는 여성의 경우, 다섯 집단 모두 식생활 영역에서의 시간 소비량이 가장 많으며, 기혼이면서 유배우자인 II와 III집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생활, 의생활, 가족 보살피기의 순으로 시간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III집단)의 경우는 식생활(2.43시간), 가족보살피기(1.62시간), 주생활(0.98시간), 의생활(0.72시간), 가정관리 및 기타의 순으로,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II집단)의 경우는 식생활(1.78시간), 주생활(0.62시간), 가족보살피기(0.57시간), 의생활, 가정관리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기혼 무배우 집단(III집단)이 식생활(0.45시간), 의생활(0.12시간), 주생활(0.33시간)에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보살피기와 기타영역에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II집단)이 타 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미취업 여성은 모든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 취업여성도 다른 집단보다는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경우 취업여부보다는 배우자유무에 의해서 가사노동 시간 사용량이 차이가 나며, 기혼여성의 경우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무가 가사노동의 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배우자가 없는 기혼남성의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였다.

3.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가.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시간사용조사 결과는 각 국가에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 하는데 사용되었다. 시간사용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3가지-기회비용법, 종합적 시장대체법, 전문가 대체법-이다. 이 방법들은 소득세 공제전(gross) 또는 공제 후(net)의 임금을 과 표준 노동시간량(paid) 또는 실제 노동시간량(actual)에 근거한 임금률에 따라 결과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Sousa-Poza, 1999).

기회비용법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이 가계구성원들의 성별이나 연령, 그 숙련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기대되어지는 임금률로 평가된다. 이 방법에서는 개인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기대되어지는 임금이 조사되는데, 대안적인 데이터의 결여로 인하여 노동력 밖에서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자나 개인이 받는 임금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기회비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여성이 집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 시간배분이라는 의사결정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때문이라면, 무급노동가치가 시장임금과 같다는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무급노동의 한계가치는 평균가치보다 낮아진다. 그런데 시장임

금률은 무급노동의 한계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임금률을 적용하여 무급노동의 총가치를 산출하면, 무급노동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회비용법을 적용하면 똑같은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Ferber & Birnbaum, 1980).

전문가 대체법과 종합적 대체법 등의 시장비용법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로 대체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임금수준을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대체법이 무급노동에 속하는 각각의 활동을 분류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시장임금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종합적 대체법은 가사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해야 하는 파출부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경력 년수가 길고, 특별한 장비나 설비를 사용하므로 가계구성원보다 생산적이고, 그 결과 그들의 임금수준은 높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파출부의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에 적용하는 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서 세금, 사회보장비용 등을 공제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3년 SNA에 의하면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를 위해서 투입량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하기 전(gross)의 임금률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표 6 > 각국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

국 가 명	기회비용법	종합적 대체법	전문가 대체법
오스트레일리아(1992)	○	○	○
캐나다(1992)	○	○	○
덴마크(1990)	○	○	-
핀란드(1990)	○	○	-
독일(1992)	○	○	○
뉴질랜드(1991)	○	○	○
노르웨이(1991)	-	○	○

출처 : OECD National Accounts(2000)

< 표 6 >은 각국에서 최근 조사된 시간사용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적용한 방법들을 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가지 방

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평가방법의 산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은 < 표 7 >에 제시된다.

<표 7> 각국의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국가명	시간조사 년도	내용		평가방법에 따른 GDP 대비 비율				
				기회비용*		종합적 대체법	전문가 대체법	
				Gross	Net			
오스트레일리아	1992	총무보수노동		69	52	54	58	
		무보수가사노동		64	48	49	53	
		여성의 할당비율		66	66	66	65	
캐나다	1992	가정노동,가계구성원들을 위한 돌봄,쇼핑		46.3	30.6	-	41.4	
		여성의 할당비율		57.6	61.7	-	63.4	
덴마크	1970-90	가정노동,자녀돌보기,부양, 이동포함하지 않은 쇼핑 (millions of DKK)	1970	89,393		-	-	
			1980	97,036				
			1990	103,137				
		여성의 할당비율	1970	79				
			1980	67				
			1990	60				
핀란드	1987-88	가정노동,자녀돌보기,쇼핑,심부름		59		45	-	
		총가계산출물에서의 노동할당비율		-		76	-	
독일	1991/92	순 급여		96		32	34	
		총 노동임금		100		68	72	
		총가계산출에서의 노동할당비율		-		62	-	
뉴질랜드	1990	무보수 노동		I ¹⁾	II ²⁾	42	51	
				29	66			
		여성의 할당 비율		65	60	65	63	
노르웨이	1990/91	가사노동,가족돌보기		-	-	38	37	
		남성의 기여		-	-	13	13	
		여성의 기여		-	-	25	24	
한국	김정희	1992	20-59세 주부의 가사노동		36		52	42
	김태홍	1999	20세 이상 전업주부		15		12	13
			10세 이상 남녀		37		30	32

* 총기회비용법(GOC) : 인구의 각 집단에 적용가능한 평균 임금을
순기회비용법(NOC) : GOC-(소득세+그 외 세금)-(노동과 관련된 지출)+고용주들의
간접비

- 1) I : legal adult minimum wage.
- 2) II : average ordinary time wage rates.

출처 : OECD National Accounts(2000), 김정희(1994), 김태홍(2001)

나.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국민총생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시간사용자료와 임금조사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법인 전문가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그리고 기회비용법을 통해 GNP 내에서 가사노동 가치평가 비율을 추정하고자 한다.

1) 평가방법별 산출방식

① 전문가 대체법에 의한 추정

가사노동을 각 작업 영역으로 분류, 각 영역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해당 대체 직종의 시장임금율을 적용시켜 가사노동의 전체 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인구수를 적용하여 총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 경우, 단순노동의 강조에 의한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의 문제점이 있으나 다른 방법에 비해 가사노동의 내용이 다양하며 여러 종류의 작업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시간사용조사]에서 제시된 행동분류체계(대분류 9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25개)중 가사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등)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행동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여 유사한 대체 직종을 <표 5>와 같이 선정하였다.

대체 직종의 선정기준은 분류된 가사노동 행동이 대체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가 가능한지(제 3차 기준: the 3rd principle) 여부에 근거하였다. 이 기준에 근거해 Kulshreshtha & Gulab Singh(1999)는 비시장 가사노동활동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형(I)과 주로 시장에서 대체하는 유형(II)으로 구분해서 대체직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유형 I 활동은 대부분의 설거지나 식후서비스, 집안 손질 및 유지, 쇼핑이나 장보기, 애완동물 기르기 등이 포함되고, 유형 II 활동은 환자나 노인 돌보기, 인테리어, 집 페인트칠, 배관 및 전기 수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유형 I에 속하는 일반적으로 사회화가 가능하지 않은 활동들은 단순작업으로, 유형 II에 속하는 사회화가 가능한 활동은 유사한 해당직종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설거지 및 식후정리로 분류된 행동의 경우 활동 유형 I로 분류되므로 가사근로자(직종분류코드 51211)로, 식사준비의 경우는 활동 유형 II에 속하므로 조리사(직종분류코드 51221)로 대체하였다.

< 표 8 >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 행동분류와 대체직업 선정

1999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행동분류		대체직종의 선정		
		대체직종 상세 구분		임금적용 직종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1 식사준비 (요리, 식탁차리기)	· 밥짓기, 반찬 등 일상적 음식 만들기 및 상차리기 등 - 요리재료 다듬기, 시장봐 온 식품정리 - 동교하는 아이나 그 외 가족에게 밥상 차려주기 - 아기분유타기, 도시락 싸기도 식사준비	5122 조리사	호텔, 음식점 및 기타 공중음식점, 선박, 열차내 및 개인가정에서 음식물을 계획, 조직, 준비 및 조리하는 자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412 설거지, 식후 정리	· 식탁 치우기, 설거지, 젓병 삶기, 그릇정리, 주방정돈, 냉장고정리 등 식사 후 정리 관련 행동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필수품 및 가사장비를 구입·배, 금, 필수품·가사관리비, 용역비 지출 기록, 음식조리, 상차리기, 세탁, 기타 가사작업을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413 간식 및 저장식품만들기	· 비 일상적인 음식만들기 및 준비하기 - 김치, 장아찌, 김 재기 등 밑반찬 만들기, 잔치음식 싸주기 - 자기집 집들이, 가족생일, 회갑 등 잔치요리 · 간식만들기: 커피·과일·음료만들기, 케익굽기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육류 및 어류 가공처리, 소비용 관련식품을 제조, 여러 종류의 빵 및 기타 제품을 제조, 과일, 채소 및 관련 식품을 가공, 보존처리, 음료제품을 시식, 시음 및 선별하는 자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근로자
42 의류 관리				
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 손빨래, 세탁기로 빨래하기, 세탁 관련 행동 - 빨래감 분리, 세탁기에 넣기, 빨래 널기·삶기	9133 세탁원 및 다림질원	린넨 및 기타 직물의 손세탁, 다림질 또는 드라이 크리닝하는 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422 옷 정리	· 마른빨래 걸어서 개기, 정리수납, 옷장정리, 계절 옷 정리하기 등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423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 다림질, 의류 손질 및 수선 위한 바느질 · 구두 닦기 등 신발류 및 의류 손질	9133 세탁원 및 다림질원	린넨 및 기타 직물의 손세탁, 다림질 또는 드라이 크리닝하는 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424 의류수선·세탁서비스받기	·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구두·우산 수선 받기, 세탁서비스 받기 위해 기다리기 등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425 재봉, 뜨개질	· 옷, 커튼, 식탁보 만들기, 뜨개질, 수놓기, 수예하기 등	73321 섬유제품 수공예 근로자	손 또는 수지공구를 사용, 전통적 기법에 의해 기타 섬유를 방직하고 레이스 제조와 의복 및 가정용 섬유, 직조, 편직 또는 이수하는 자	73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 재료의 수공예 근로자
43 청소 및 정리				
431 방·물품 정리	· 방이나 욕실, 거실 등 집안의 물건 정리하기 - 이불깔기, 개기, 책상, 책장 등 정리하기, 장난감 정리하기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432 집안 청소 (쓸기, 닦기)	· 일상적으로 하는 집안 청소를 말함 - 쓸기, 닦기, 먼지떨기 등	91310 가사조력원 및 청소원	쓸고 청소기 청소, 가정용 린넨의 보호, 가정용품 구입, 음식 만들고 대접하는 등 기타 여러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433 그 외 청소 및 정리	· 집안밖의 비일상적 청소 및 정리 관련 행동 -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품 닦기 등 - 대청소하기, 마당, 현관, 베란다, 지하실, 창고, 정원 등 집밖 청소하기, 집 앞의 골목 청소하기 - 이삿짐 싸기, 풀기, 사은 가구 들여놓기 - 여행용 짐싸기, 여행갔다온 짐정리하기	91310 가사조력원 및 청소원	쓸고 청소기 청소, 가정용 린넨의 보호, 가정용품 구입, 음식 만들고 대접하는 등 기타 여러 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1999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행동분류		대체직종의 선정		
		대체직종 상세 구분		임금적용 직종
44 집 관리				
441 가재도구·집 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 가구, 가정용품, 집(주택, 집안팎,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직접 손질, 수리하거나 관련 서비스 받는 행동 - 벽에 못박기, 난방 기구, 수도, 문 손잡이, 창문 등 고장난 곳 점검·수리, 형광등교체, 페인트칠하기 등	9141 건물관리원	아파트, 주택, 호텔, 사무실, 교회 및 기타 건물을 관리하며 청소, 유지하는 자, 건물내부를 청소하거나 간단한 수선 및 정비를 함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442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 직접 차 수리·관리하거나 관련서비스 받기 - 세차, 차 정비, 오일 교환 등 서비스 받기	83223 일반승용차 운전원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	832 자동차 운전원
443 그 외 집관리	· 집소독, 쓰레기 처리하기 · 화분에 물주기, 화초 가꾸기(취미가 아닌 가사일로 한 경우) · 애완동물 밥주기, 돌보기 등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11 신체적 돌보기 (씻기기, 먹이기)	· 미취학 아이를 씻기기, 먹이기, 옷 입히기, 재우기 등	51310 보 모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며 그들의 일상행 동을 관찰, 학생을 돌보는 선생을 돕는 데 종사하는 자. 경우에 따라 어린이 피 복수선, 세척, 다림질하며 아이양육, 관 리에 관계없는 가사업무를 수행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12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 미취학 아이 가르치거나 같이 놀아주는 행동 - 가르치기(훈내기 포함), 책 읽어주기 - 대화하면서 돌보기, 놀아주기 - 아이가 잘 있는지 지켜봄, 아기 보기	23320 학령 전 교육교사	초등교육 연령이하 어린이의 신체, 정 신 및 사회적 발달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집단 및 개인유회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자	23 교육 전문가
513 기타 미취학 아이 돌보기	· 어린이집 차 기다리기, 놀이방선생님과 상담, 아이 병원 데리고 가기 - 이동한 경우는 이동(851)으로 분류	51310 보 모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며 그들의 일상행 동을 관찰, 학생을 돌보는 선생을 돕는 데 종사하는 자. 경우에 따라 어린이 피 복수선, 세척, 다림질하며 아이양육, 관 리에 관계없는 가사업무를 수행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1 씻기기, 등·하교 도워주기	· 깨우기, 학교나 학원갈 준비시키기, 배웅, 마중 ※ 차로 등하교 시켜주는 가족돌보기 관련 이동(851)으로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22 숙제, 공부 봐 주기	· 숙제 도와주기, 학교과정과 관련된 내용 가르치기, 공부시키기	23310 초등교육 교사	국민학교 및 기타 초등교육 기관에서 읽기, 쓰기, 산수 및 기타 초등교육 과정 을 가르치고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 초등교육 과정을 가르치 는 자	23 교육 전문가
523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	· 학교 및 학원에서 선생님과 상담, 어머니 모임에 참석하기 등	23310 초등교육 교사	국민학교 및 기타 초등교육 기관에서 읽기, 쓰기, 산수 및 기타 초등교육 과정 을 가르치고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 초등교육 과정을 가르치 는 자	23 교육 전문가
524 기타 학생 보살피기	· 병원, 스포츠 센터, 학원 등에 같이 가서 있음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1999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행동분류		대체직종의 선정		
		대체직종 상세 구분		임금적용 직종
53. 배우자 보살피기				
530 배우자보살피기	· 배우자를 보살피는 행동 - 배우자 출근 준비 돕기, 안마해 주기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1422 개인시중원	고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중을 들고, 의 상과 소지품을 정리·유지,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 경우에 따라 고용 주의 몸·얼굴을 맞사지 해주거나 식 사를 제공하기도 함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4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부모, 조부모를 보살피는 행동 - 안마, 염색 해드리기, 등 밀어 드리기, 식사 시중들어 드리기 등 신체적 도움 - 병원에서 접수, 약타기 등 도와주는 경우 등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1422 개인시중원	고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중을 들고, 의 상과 소지품을 정리·유지,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 경우에 따라 고용 주의 몸·얼굴을 맞사지 해주거나 식사 를 제공하기도 함	
55. 그 외 가족 보살피기				
550 그 외 가족 보살피기	· 아이, 학생, 배우자,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가족을 돕는 행동 -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 4촌이내 친척 등 돌보기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자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1422 개인시중원	고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중을 들고, 의 상과 소지품을 정리·유지,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 경우에 따라 고용 주의 몸·얼굴을 맞사지 해주거나 식사 를 제공하기도 함	
45.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451 시장보기 (식료품, 일용품 등)	·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주·부식 및 간식 구입 행동 - 일용품(비누, 휴지, 세제류, 종이거저귀 등) 구입하기	3416 구매대리인	공업, 상업 기타 업체나 단체를 대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 장비, 원재료, 제품, 비품의 구매 및 재판 매를 위한 상품 구입위해 협상, 계약함. 수요·재고에 관한 정보를 획득, 구매 상 품의 수량과 품질 구매비용, 인도일자 기 타 계약조건을 결정함.	34 기타 준 전문가
452 쇼핑하기 (의복, 신발, 장식용품 등)	· 식료품, 일용품, 내구재 제외한 물품구입 행동 - 책, 옷, 신발, 식기, 장식용품(반지, 액자등), 화장품 등을 시장·상점에서 직접 구입거나 전화로 주문하는 행동 ※ 주목적이 아이쇼핑이라면 여가관련 물품구입(780)으로	3416 구매대리인	공업, 상업 기타 업체나 단체를 대리, 상 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 장비, 원재료, 제품, 비품의 구매, 재판 매를 위한 상품 구입위해 협상, 계약함. 수요·재고에 관한 정보를 획득, 구매 상품의 수량과 품질 구매비용, 인도일 자 기타 계약조건을 결정함.	34 기타 준 전문가
453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 주택,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구입 및 관련정보를 알아보는 행동 - 집보러 다니기, 모델하우스 구경 등	131 종합관리자	한사람을 넘지 않는 다른 관리자의 조 력과 일정수의 비관리직의 보조하에 지 영 또는 고용되어 관리하는 소기업, 단 체를 대표함	13 종합관리자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1999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행동분류		대체직종의 선정		
		대체직종 상세 구분		임금적용 직종
46 가정경영				
461 가계부 정리	· 가계부 쓰기, 공과금 계산 등 관리하기	4121 회계 및 부기사무원	회계 및 장부기록과 계산, 임금지급을 포함하여 임금 및 생산비의 계산을 돕는 자	412 계수사무원
462 가정계획 (저축,가족회의)	· 저축·주택 등과 관련해서 가정계획 세우기, 이를 위해 가족과 의논하기, 가족회의 하기	131 종합관리자	한사람을 넘지 않는 다른 관리자의 조력과 일정수의 비관리직의 보조하에 자영 또는 고용되어 관리하는 소기업, 단체를 대표함	13 종합관리자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은행·관공서 일보기 - 텔레뱅킹, 보험회사에서의 안내·상담받기 ·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우체국, 법원(소송) 등 관공서 일보기 - 법률 사무소(상담), 세무사·변리사 사무소, 여행사 등 서비스 받기	4121 회계 및 부기사무원	회계 및 장부기록과 계산, 임금지급을 포함하여 임금 및 생산비의 계산을 돕는 자	412 계수사무원
499 기타 가사일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지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841 가정관리 관련 이동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지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851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		51211 가사근로자	개인가구, 호텔 및 기타시설의 가사지 작업 계획, 조직 및 감독하는 자. 경우에 따라 기타 가사작업 수행도 함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표 8>에서 제시된 대체직종은 1992년 통계청이 고시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제5차 개정(2000년 통계청 고시)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적용한 임금구조조사가 발행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경우 제4차 개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남녀로 연구대상자를 한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사용한 인구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2000)이다. 한편, 월평균 근로일수를 정영금(1989)과 김선희(1991)는 30일로 계산한 것에 비해 김정희(1994)는 GNP와의 비교를 위해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눈 30.4일로 계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GNP와의 비교를 위해 1달을 30.4일로 계산하였다.

< 표 9 > 대체직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

(단위 : 원)

대체직종	월평균 임금	구분	전경력	1년미만	1년~2년	3년~4년	5년~9년	10년 이상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남+여)/2		5,370	3,621	4,496	5,082	5,748	6,867
	남		6,296	4,038	5,398	5,715	6,649	8,381
	여		4,444	3,203	3,594	4,448	4,847	5,352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	(남+여)/2		4,401	3,022	3,842	4,174	4,677	10,343
	남		5,394	3,305	4,471	5,105	5,749	6,475
	여		3,408	2,739	3,212	3,243	3,605	3,868
913 가사 및 관련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남+여)/2		3,908	3,050	3,334	3,752	4,081	4,745
	남		4,608	3,422	3,873	4,346	4,833	5,557
	여		3,207	2,677	2,795	3,157	3,329	3,932
73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 재료의 수공예 근로자	(남+여)/2		4,990	4,105	4,153	4,619	4,918	7,159
	남		5,858	4,105	4,153	5,187	5,612	7,159
	여		4,122	-	-	4,050	4,224	-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남+여)/2		4,200	3,060	3,370	4,091	3,815	5,628
	남		4,399	3,177	3,538	4,227	3,952	6,462
	여		4,000	2,942	3,201	3,955	3,678	4,794
832 자동차 운전원	(남+여)/2		5,698	3,822	4,978	5,228	6,361	6,405
	남		5,954	4,797	5,451	5,655	5,992	6,432
	여		5,442	2,846	4,504	4,800	6,730	6,377
23 교육 전문가	(남+여)/2		12,399	5,483	8,298	9,519	11,571	14,965
	남		14,702	6,356	10,735	11,790	13,175	15,793
	여		10,096	4,610	5,861	7,248	9,967	14,136
34 기타 준 전문가	(남+여)/2		8,447	5,309	6,564	7,183	8,638	11,074
	남		9,761	6,149	7,219	7,836	9,456	11,787
	여		7,132	4,469	5,909	6,529	7,820	10,361
13 종합관리자	(남+여)/2		11,141	6,943	8,205	7,282	8,758	12,224
	남		11,988	7,558	9,201	8,559	9,466	13,230
	여		10,293	6,328	7,208	6,005	8,049	11,217
412 계수사무원	(남+여)/2		7,518	4,654	5,754	6,490	7,878	10,277
	남		9,489	5,851	7,108	7,836	9,538	11,778
	여		5,546	3,457	4,400	5,143	6,218	8,775

출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1, 노동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임금구조조사의 경우 직종 중(소)분류까지만 임금통계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사용 조사의 가사노동 행동분류 중 대체 직종이 세세분류에 속하는 경우, 해당직종의 중(소)분류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을 <표 9>와 같이 적용하였다.

임금수준의 경우, 기존의 많은 연구들(김태홍, 2001; 김정희, 1994; 김선희, 1991; 김애실, 1985)은 미취업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일부 연구(문숙재·정영금, 1991; 정영금, 1989)에서는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이나 남성의 임금을 중 하나를 양성(兩性)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여성에게 여성의 임금을, 남성에게 남성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과대,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가사노동에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차를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OECD National Accounts,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산출방식을 제안하고자, 기존의 연구와 동일하게 여성근로자 임금을 적용한 방식(방법 A)과 여성에게는 여성의 임금을, 남성에게는 남성의 임금을 적용한 방식(방법B)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각각의 임금을 합한 후 2로 나누고 이 평균 임금을³⁾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방법(방법C)을 모두 제시하였다⁴⁾.

결국, 전문가 대체법을 통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시간사용조사]의 소 분류 행동별로 측정된 가사노동시간에 해당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률과 혼인상태에 따른 각 집단의 인구수를 곱하여 각 집단별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들의 합으로 총 가치를 산출하였다(부록 1 참고).

▣ 전문가 대체법에 의한 산정

- 소 분류별 가사노동(시간)×대체 직종의 시간당 임금률(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1 일 가사노동 가치(원)×30.4(일)×인구수(천명) =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원)

3) 각 직종의 여성 근로자 임금률 = 월 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 / 12) / 평균 근로시간 수
 각 직종 남성 근로자 임금률 = 월 급여액 + (연간특별급여액 / 12) / 평균 근로시간 수
 * 대체직종 임금률 = (여성근로자의 임금률 + 남성 근로자의 임금률) / 2
 4) A, B, C, 방법 모두 소득세 공제전(gross) 실제(actual)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종합적 대체법에 의한 추정

종합적 대체법에 의한 가치평가방법은 대체직의 선정과 적용 임금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들(김정희, 1994; 김선희, 1990; 김애실, 1985)은 파출부, 가정부, 관리자, 가정부와 관리자의 2인 대체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때 파출부를 통한 평가는 조사 당시 가정에서 실제 지불하는 임금과 각 사회기관의 협정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방법들의 평가액에 비해 가장 낮게 산정 되었다. 한편, 관리자 1인 대체법은 가사노동의 단순노동영역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때문에 평가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부 1인 대체법은 관리영역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김선희(1991)와 김정희(1994)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 영역을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양분하여 각 영역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가정부와 관리자 2인 대체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인 대체법의 적용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이에 상응할 만한 한 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보수를 측정하는 종합적 대체비용법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1인 대체법과 2인 대체법을 모두 적용해 봄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인 대체법의 경우, 선행연구(김애실, 1985; 정영금, 1989; 김선희, 1991; 김정희, 1994)들은 파출부나 가정부의 실제 지불 임금 및 사회기관의 협정임금을 이용하였으나 GNP와의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식 임금체계에서 제시되는 임금률을 사용한 김태홍(2001)의 연구를 참고로 가사근로자(51211)를 대체근로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2인 대체법의 경우 가사노동의 영역이 크게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을 각각 가사 및 관련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913)과 종합관리자(13)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종합적 대체법을 통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혼인상태에 따른 각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에 해당 임금률과 인구수를 곱하여 각 집단별 가사노동가치를 산정하고, 이들의 합으로 총 가치를 산출한다(부록 1 참고).

▣ 종합적 대체법에 의한 산정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률 (예, 방법 C의 경우)
 - 1인 대체: 5,370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원)
 - 2인 대체: 3,908 (가사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 11,141(종합관리자) / 2 = 7,525 (원)
-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7,525(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30.4(일) × 인구수(천명) =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원)

③ 기회비용법에 의한 추정

주부가 취업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기회비용법의 경우, 직접 설문을 통해 잠재소득을 371,094원으로 산출한 김애실(1985)의 연구는 비슷한 시기에 실제 임금율을 적용시킨 최명숙(1986)의 연구결과(397,864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주부와 동일한 연령과 학력의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율을 적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정영금(1989)의 경우 기회비용법에 근거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529,941원으로 그 가치가 다른 연구결과보다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고학력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태홍(2001)은 여성근로자의 임금율 및 연령과 학력을 고려해서 각각 산출한 결과, 연령과 학력을 동시에 고려한 대졸여성집단의 기회비용이 약 19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령집단별 임금율과 여성근로자 임금율을 적용한 경우 높게 산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가사노동 숙련도나 가치가 학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령과 학력을 동시에 고려한 임금률의 적용은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산정은 혼인상태와 연령 구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1999년 임금구조 기본 조사](2000)를 사용하여 각 방법별로 전 직종 여성근로자 임금률(방법 A), 여성에게는 전 직종 여성근로자 임금률과 남성에게는 전직종 남성근로자 임금률(방법 B), 그리고 전 직종에서의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임금률을 이용한 평균 임금률(방법 C)을 도출하였다.

< 표 10 > 전 직종의 연령별 시간당 임금률

(단위 : 원)

연령	구분	여성근로자 임금률	남성근로자 임금률	평균 임금률 (여성+남성임금률 / 2)
전체		5,146	7,871	6,509
20세 미만		3,357	3,116	3,237
20 - 24세		4,521	4,072	4,297
25 - 29세		5,664	6,000	5,832
30 - 34세		6,755	7,707	7,231
35 - 39세		5,919	9,019	7,469
40 - 44세		5,096	9,580	7,338
45 - 49세		4,688	9,543	7,116
50 - 54세		4,490	8,834	6,662
55 - 59세		4,008	7,088	5,548
60세 이상		4,517	6,106	5,312

출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 노동부

연령별 가치산정에서는 방법(A, B, C)에 따라 연령집단별 전 직종의 임금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령집단은 [1999년 임금구조기본조사]자료가 5세 간격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어 <표 10>과 같이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혼인상태와 연령별로 각 집단에서 측정된 가사노동시간에 전 직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률 및 평균 임금률과 집단별 인구수를 곱하여 각 집단별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들의 합으로 총 가치를 산출한다(부록 1 참고).

- 기회비용법에 의한 산정(예, 방법 C 경우)
- 혼인상태별
 - 각 집단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전 직종의 평균 임금률 6,509(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30.4(일) × 인구수(천명) =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원)
- 연령집단별
 - 각 연령별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각 연령별 평균 임금률(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1일 가사노동 가치(원) × 30.4(일) × 인구수(천명) =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원)

2) 평가방법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혼인상태 및 배우자유무와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5개의 여성집단과 3개의 남성집단에 대해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별로 산정한 월평균 경제적 가치 평가는 <표 11>과 같다.

< 표 11 > 평가방법별 월 가사노동 가치

(단위 : 원)

집 단		여 성					남 성			
		I	II	III	IV	V	I	II	III	
전문가 대체 비용법	A	112,906	669,043	842,293	332,880	465,120	98,830	119,533	174,070	
	B	112,906	669,043	842,293	332,880	465,120	136,253	168,811	245,450	
	C	155,283	818,520	1,198,520	409,184	564,893	117,557	144,187	213,621	
종합적 대체 비용법	2인 대체	A	180,576	787,968	1,372,788	510,948	691,524	67,716	153,900	242,136
		B	180,579	787,968	1,372,788	510,948	691,524	83,246	189,194	297,666
		C	201,309	878,438	1,530,404	569,612	770,921	75,491	171,570	269,937
	1인 대체	A	118,886	518,775	903,803	336,393	455,279	44,582	101,323	159,415
		B	118,886	518,775	903,803	336,393	455,279	63,161	143,549	225,850
		C	143,658	626,872	1,092,129	406,488	550,146	53,872	122,436	192,633
기회 비용법	A	137,666	600,723	1,046,573	389,532	527,197	51,625	117,329	184,597	
	B	137,666	600,723	1,046,573	389,532	527,197	78,962	179,459	282,349	
	C	174,129	759,835	1,323,774	492,705	666,834	65,298	148,405	233,491	

A : 여성임금을 적용

B : 여성은 여성임금을, 남성은 남성 임금을 적용

C : 평균 임금을 ((여성임금+남성임금) / 2) 적용

집단별로 여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미취업 집단(III집단)의 월평균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III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별로 적용한 임금률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경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집단의 경우, 우선 여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적용한 A방법과 B방법을 살펴보면 기혼 유배우자 취업여성(II집단)은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 순으로, 기혼 무배우자 미취업여성(집단 V)은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기회비용법, 전문가대체법,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여성 3집단(I, III, IV집단)의 경우는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기회비용법,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 전문가대체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임금을 사용한 방법 C의 경우는 기혼 유배우자 취업여성(집단 II)을 제외하고는 4집단(I, III, IV, V집단) 모두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기회비용법, 전문가대체법,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의 순으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높게 산정되었다.

남성집단의 경우, 임금을 적용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남성 임금을 적용한 방법 B, 평균임금을 적용한 방법 C, 여성의 임금을 적용한 방법 A의 순으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미혼남성(I집단)의 경우 전문가대체법,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기회비용법,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의 순으로, 기혼의 경우(II, III집단)는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기회비용법, 전문가대체법,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 순으로 가치평가가 높게 산정되었다.

모든 집단별로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방식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이 2인 대체법을 적용할 때 단순노동시간과 관리적 노동시간을 각각 측정, 이에 상응하는 대체직업 임금을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역별 시간은 구분하지 않고 대체직업의 임금을 2영역(단순노동과 관리영역)으로 나누어 선택하고 이 두 대체직의 임금을 합해서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관리자와 가정부 2인 대체에 의하여 산정한 김정희(1994)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임금률 자료를 이용한 김정희의 연구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는 약 76만원으로 이를 연평균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1999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기혼여성을 배우자 유무와 취업유무에 의해 세분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2인 대체법 중 평균임금을 적용한 C방법(기혼 유배우자 미취업 약153만원, 기혼 무배우자 미취업 약 77만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사노동 가치평가는 임금을 적용상의 문제와 대체직 선정으로 인한 과소, 과대평가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어떠한 대체직이 선정되어야 하며,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와 2인 대체방식 중 더 적절한 방식은 무엇인가의 문제, 그리고 기회비용법과 다른 산정방식 모두 적합한 임금을 선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표 11>을 살펴볼 때 남성의 경우 동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어떤 임금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기회비용법과 같이 취업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의 기회비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⁵⁾.

이렇게 적용 임금을 선택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해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전업주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경우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경우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그 제도적 반영을 모색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므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별 대(對) GDP 비율

가사노동의 연평균 가치평가액은 평가방법과 평가시 적용된 임금률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률(방법 A)이 적용된 경우, 약 134조에서 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평가액은 1999년 우리나라 GDP(약 476,597십억원)의 대략 28%-43% 수준이었다. 여성과 남성 임금률이 각각 적용된 경우(방법 B)에는 그 평가액이 약 142조에서 약 210조원에 이르며, 대 GDP 비율은 30%-44%정도였고, 평균 임금을 적용(방법 C)한 평가에서는 약 162조-약 228조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낮은 평가액은 약 134조(28.2%)로

5)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에서 보여지듯이(표 9, 표 10 참조), 노동시장의 성에 의한 임금률 차이는 여성과 남성의 시장 잠재소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취업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회비용법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시장노동의 기회비용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동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성에 의해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법(방법 A)이었고, 종합적 대체법 중 2인 대체법(방법 C)은 약 228조(47.8%)로 다른 방법에 비해 그 가치가 가장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 표 12 > 가사노동의 총 평가액과 대(對) GDP 비율

(단위 : 원)

평가	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종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2인 대체	1인 대체	혼인상태별	연령집단별
방법 A	연평균 평가액	약 146 조	약 204 조	약 134 조	약 156 조	약 157 조
	대 GDP 비율*	30.62 %	42.88 %	28.23 %	32.69 %	33.06 %
방법 B	연평균 평가액	약 155 조	약 210 조	약 142 조	약 167 조	약 167 조
	대 GDP 비율*	32.64 %	44.18 %	29.79 %	34.99 %	35.02 %
방법 C	연평균 평가액	약 190 조	약 228 조	약 162 조	약 197조	약 193 조
	대 GDP 비율*	39.99 %	47.80 %	34.11 %	41.34 %	40.53 %

* 가사노동 연간 평가액 ÷ 1999년도 경상 GDP × 100
 방법A : 여성임금률 적용
 방법B : 여성은 여성임금률, 남성은 남성임금률 적용
 방법C : 평균 임금률((여성임금률+남성임금률) / 2) 적용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국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표 7> 참고)와 비교할 때, 최저 31%에서 최고 69%에 이르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36%-52%로 산정된 김정희(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와 평균 임금을 사용한 방법 C를 제외하고는 30%-37%로 산정된 김태홍(2001)의 연구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과 평가방법, 적용된 임금률 및 가사노동 활동에 포함된 활동영역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책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과 주부지위 개선방법

가. 사보험과 노동력상실권

1) 실태

현재 사보험과 관련하여 노동상실 수익액을 산정할 때, 보험회사와 법원은 상이한 산정방식을 사용한다. 즉, 보험회사는 지급기준의 보상액 산정시 이자공제를 위해 복리산정방식의 라이프니츠 계수를 이용하고, 법원은 소송판결시 손해액을 단리산정방식의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있다⁶⁾. 이때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을 위해서는 월소득이 사용되며 이자공제를 위해 적용되는 계수를 위해서는 취업가능월수인 정년년한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적용은 다른 집단 보다 특히 전업주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무직자로 간주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월소득은 일용노동임금에 월 근무일수 22일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고, 계수를 적용하여 노동상실 수익액을 산출할 때에는 60세를 정년년한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활에서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그 양적, 그리고 질적인 비중 또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용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가사노동은 인간생활에 있어 일상적, 반복적,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일수 22일과 정년년한 60세의 적용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과소평가하도록 하여 합당한 근거로 배상액을 산출하지 못하

6) 현재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중간이자 공제 방법 :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될 연 또는 월간 순수입이 정해지고 그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동가능기간이 정해지면 각 수치를 곱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총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총액은 매년 또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실수익액의 총액이므로 만일 이를 일시금으로 배상할 경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되어 과잉배상이 되므로 그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① 지급기준(보상액)산정은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여 복리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배상액의 현가 = 장래의 수익액 / (1+이율)^{수익기간}) ② 소송판결액(손해액) 산정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단리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배상액의 현가 = 장래의 수익액 / (1+수익기간×이율))

- ▣ 노동상실수익액 산정방법 : 지급기준(보상액) 산정은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하고 소송판결액(손해액) 산정은 호프만 계수를 산정한다.

①사망시 : (월소득-생계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또는 호프만)계수 × (1-과실율)%

②후유장해시: 월소득×노동능력상실율×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또는 호프만)계수×(1-과실율)%

게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적용시킨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하고 피해발생시 본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가치는 사고시 전업주부가 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주부 대신 대체노동력을 고용하여 그 일을 처리하였을 때 드는 비용으로 산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업주부의 대체직업은 그 대체노동력 고용자의 직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대체노동력 고용비설을 따른 것으로 그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그와 유사한 노동에 상응하는 한 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보수를 기준으로 대체직업이 선정될 수 있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그 사고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지식, 경험과 활동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경우에 지급하게 될 보수액 상당의 비용을 그 산정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황병일, 1991).

이에 사보험제도에서 사고 전 직업기준의 노동상실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직자로 일괄 처리되던 전업주부의 직업을 대체노동력 고용비설에 근거한 종합적 대체비용법으로 대체직업을 선정할 수 있다.

2) 가사노동시간 분석을 통한 전업주부의 월근무일수와 정년년한 산정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분석을 통해 현재 사보험제도에서 전업주부에게 적용하고 있는 일용임금근로자 임금과 월 근무일수 및 정년년한이 과연 합당한 근거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전업주부의 월 근무일수 산정은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요일별 가사노동시간량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13>과 <표 14>는 ANOVA 분석과 Duncan 검증을 통해 여성집단과 남성집단간에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여성집단의 가사노동시간량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업주부의 대표유형으로 볼 수 있는 기혼유배우 미취업여성집단(여성 III집단)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가사노동시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유배우 취업여성집단(여성 II집단)의 경우는 일요일, 토요일, 평일 순으로 가사노동시간량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무배우 미취업여성집단(여성 V집단)의 경우는 평일과 토요일에 가사노동시간량이 가장 많고, 일요일이 그 다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유배우 남성집단(남성 II집단)의 경우는 일요일, 토요일, 평일 순으로, 기혼무배우 남성집단(남성 III집단)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의 순으로 가사노동시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량은 여성보다 극히 낮았는데, 이 점에서 가사노동은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3 > 여성 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요일별

(단위 : 시간)

요일 \ 집단	I			II			III			IV			V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평일	0.70	5944	C	3.73	8473	C	6.95	7174	A	2.37	1776	B	3.54	2251	A
토요일	0.97	1847	B	3.85	2698	B	6.79	2442	B	2.62	608	A	3.37	749	A
일요일	1.40	1775	A	4.24	2650	A	5.87	2351	C	2.64	598	A	2.92	717	B
F값	185.42***			44.31***			123.65***			6.14**			14.47***		

p<.01 *p<.001

< 표 14 > 남성 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요일별

(단위 : 시간)

요일 \ 집단	I			II			III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평일	0.28	6536	C	0.67	14931	C	1.11	713	B
토요일	0.37	2129	B	0.75	4926	B	1.42	226	A
일요일	0.51	2084	A	0.98	4761	A	1.20	217	AB
F값	64.74***			92.29***			3.50*		

*p<.05 ***p<.001

이와 같이 전업주부의 경우 일요일엔 가사노동시간량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나 그 수치가 적지 않으며(유배우의 경우 5.87시간=352분, 무배우의 경우 2.92시간=175분), 평일과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량도 유배우자 미취업(여성 III집단)의 경우 하루 6.67시간(400분), 무배우 미취업(여성 V집단)의 경우 3.33시간(200분)이 넘는 노동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현재 22일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동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즉, 22일은 월 평균 30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것인데, 연구결과는 전업주부의 경우 토요일의 노동량을 고려하지 않은 22일의 가동일수 적용은 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조사시기 1999년도의 전직종 평균 노동시간량이 3.52시간(211분)이며, 이 당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사 및 관련 조력원/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의 평균 노동시간량(남녀평균임금을 기준)은 3.37시간(202분)으로(노동부, 1999) 노동시간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업주부의 토요일 노동량은 월 근무일수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량을 근거로 한 월 근무일수는 일요일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토요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켜 26일로 수정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편, 전업주부의 정년년한 산정은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표 15>는 ANOVA 분석과 Duncan 검증을 통해 여성집단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여성집단의 가사노동시간량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기혼유배우 미취업집단(여성 III집단)의 경우, 20대와 30대에 가사노동시간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와 50대, 60대와 1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무배우 미취업집단(여성 V집단)의 경우, 30대와 50대의 가사노동시간량이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20대는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량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60대 이상에서도 가사노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 표 15 > 여성 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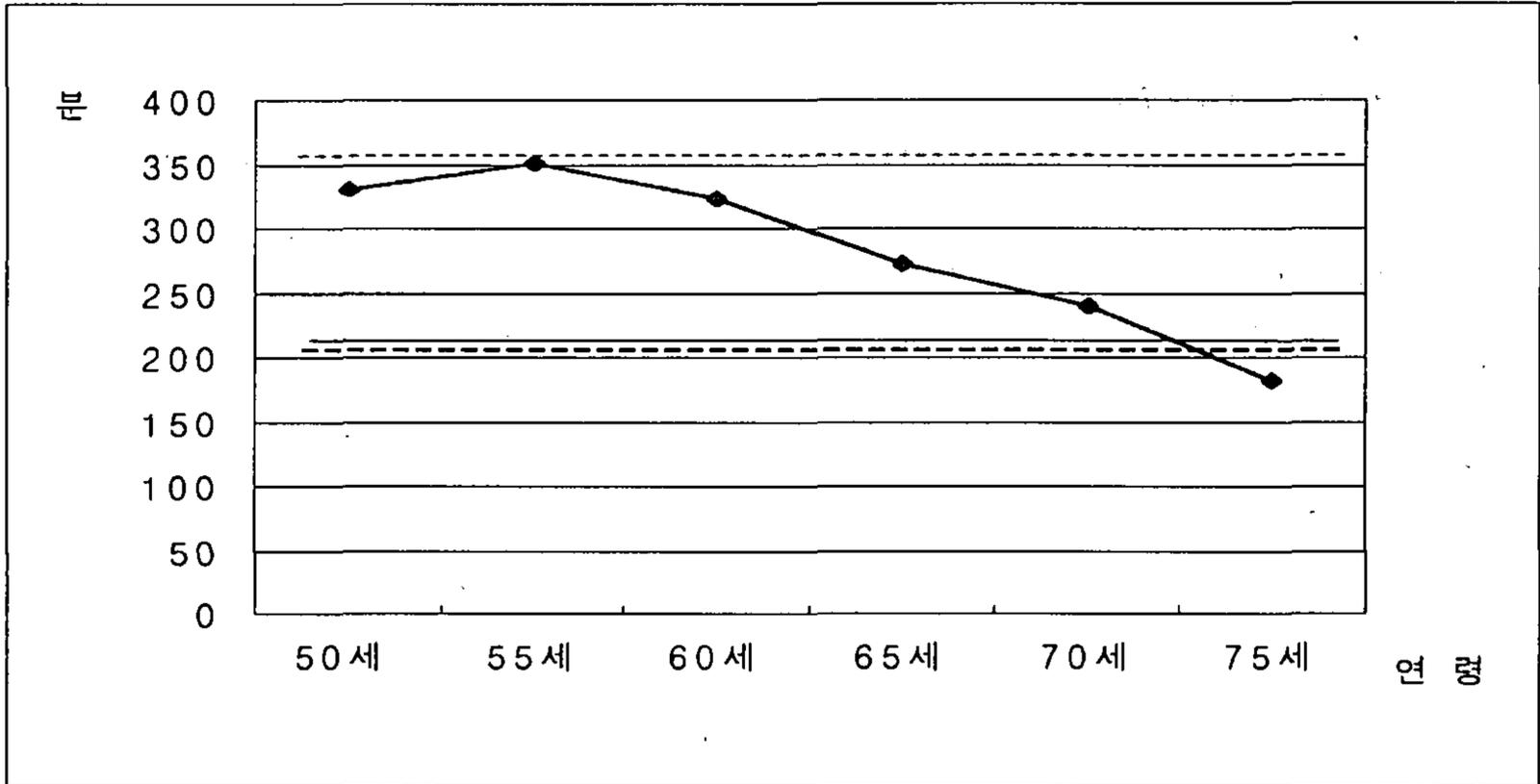
(단위 : 시간)

연령	I			II			III			IV			V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10대	0.54	4315	E	5.53	12	A	4.99	32	C	-	-	-	-	-	-
20대	1.06	4701	DE	4.101	1136	B	7.61	2134	A	2.17	30	A	3.66	18	B
30대	1.75	426	CD	4.29	4319	B	7.47	3966	A	2.29	218	A	4.86	60	A
40대	2.66	88	BC	3.63	4185	BC	6.30	2502	B	2.39	534	A	4.21	158	AB
50대	4.17	20	A	3.11	2463	BC	6.03	1788	B	2.58	658	A	4.63	400	A
60대	3.5	14	AB	3.52	1442	BC	5.32	1107	C	2.69	878	A	4.25	985	AB
70대 이상	2.08	2	CD	3.10	264	C	4.13	438	D	2.22	664	A	2.63	2096	C
F값	146.23***			46.97***			225.87***			5.29***			87.39***		

*** p<.001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50대 이상의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연령별 가사노동시간량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점선 ①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시된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355.1분)을 나타내는 선이며, 점선 ②는 전직종 1일 평균 노동시간량(210분)을 나타내고, 점선 ③은 대체직종 기준의 1일 평균 노동시간량(202분)을 나타낸다.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을 나타내는 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50세 이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은 55세를 기준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70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은 전직종 1일 평균 노동시간량이나 대체직종 기준의 1일 평균 노동시간량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60세로 적용되고 있는 전업주부의 정년연한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업주부의 정년연한은 70세 이상으로 제안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삶의 질적 향상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과 정년연한이 줄어들고 있는 점(매일경제, 2001, 7, 25일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



- ① - - - 전업주부의 1일평균 가사노동시간량(355분)
- ② ——— 전직종 1일평균 노동시간량(210분)
- ③ - - - - - 대체직종 기준의 1일 평균 노동시간량(202분)

<그림 3> 50세 이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 추이

능한 적정선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사보험제도에서 농업종사자들의 정년연한이 65세인 점과 농업노동의 특성과 가사노동의 특성이 유사하다⁷⁾는 점을 근거로 전업주부의 정년연한은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전업주부의 노동력상실 수익액 산정 과정

월 근무일수 26일을 적용해 산출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월평균 가치산정액은 다음과 같다.

7) 가사노동의 근원을 살펴보면, 현재는 많은 영역들이 기계화되고 사회화되었으나 그 내용이 전 가족이 노동에 동원되고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이익이 존재하나 그 명확한 분리가 어렵다는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는 농업종사자들의 노동특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1인 대체

① 여성임금률(A방법) 적용시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355.10분=5.92시간) × 시간당 임금률(4,444원)
× 월 근무일수(26일) = 684,020원

② 남녀평균임금률(C방법) 적용시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355.10분=5.92시간) × 시간당 임금률(5,370원)
× 월 근무일수(26일) = 826,550원

■ 2인 대체

① 여성임금률(A방법) 적용시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355.10분=5.92시간) × 시간당 임금률(6,750원)
× 월 근무일수(26일) = 1,038,9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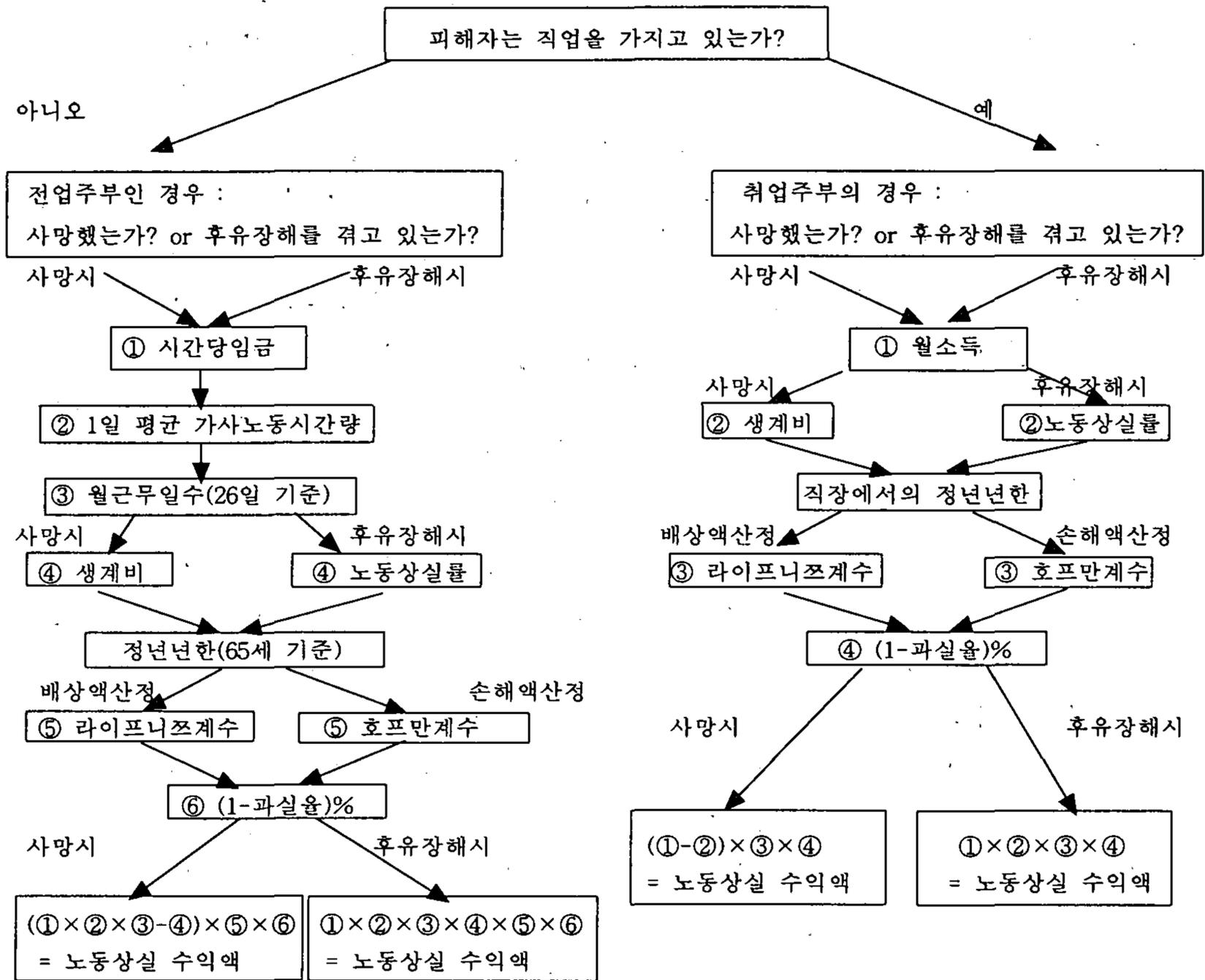
② 남녀평균임금률(C방법) 적용시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355.10분=5.92시간) × 시간당 임금률(7,525원)
× 월 근무일수(26일) = 1,158,000원

위의 연구결과로 추정된 사보험관련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시 필요한 중요변수 및 적용단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직업유무를 기준으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인 경우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취업주부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신의 직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월소득과 정년년한을 기준으로 사망시 배상액이나 손해액, 혹은 후유장해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되어진다.

첫 번째 단계의 물음에서 전업주부라고 응답한 경우는, 피해자의 월소득 산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산정된 시간당 임금,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 월 근무일수 26일, 정년년한 65세를 기준하여 사망시 배상액이나 손해액, 후유장해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되어진다. 이 때 시간당 임금과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분석 자료가 1999년도를 기준하여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년도의 시간당 임금 혹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통계청에서는 계속 실시할 전국민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토대로 수정하면 된다.



<그림 4> 주부의 노동력상실 수익액 산정 과정

나. 부부재산권과 재산분할청구권

1) 실태

재산분할이란 혼인 생활과정에서 부부 양 당사자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하여 온 재산을 혼인 관계 청산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혼인을 해소할 경우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청산적 요소와 혼인 해소시에도 일방의 생활이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김영갑, 1991; 김주수, 1991). 그

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이 민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여러 가지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첫째, 혼인 중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법률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기여 비율은 균등하다고 보는 평등설, 둘째, 기여 비율은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평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실상의 추정으로 구체적인 기여 비율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등 추정설, 셋째, 기여 비율에 관한 확실적인 기준은 없으며 각 사안마다 부부가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기여도를 평가하여 기여 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인 기여도설 등 세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839조 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산정과 그 비율의 확정 등에 대한 조항없이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다(민유숙, 1993). 따라서 법관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노력 정도, 혼인 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연령, 취업 가능성, 건강 상태, 재혼 가능성, 자활 능력, 요부양자의 유무, 이혼 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16 참고).

이때 법원은 혼인 중 부부의 노동 형태에 따라 기여도를 다르게 평가한다. 즉 부부 쌍방이 금전적 소득을 취득하는 맞벌이형,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남편이 운영하는 자영업에 아내가 협력하는 가업협력형, 남편은 금전적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형으로 구분된다(민유숙, 1993). 적용 판례를 살펴보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는 재산분할비율이 50%로 인정되며,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취업 및 부업을 하는 경우는 30-40%에 이르고, 대부분 부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30% 이하의 재산분할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참작되는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는 가장 낮게 인정되어 실질적 분할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재산분할의 비율이 18%로 가장 낮은 경우를 살펴보면, 주부가 부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아들을 남편이 양육하는 점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어 분할율이 낮게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재산분할청구권 적용 판례

사건번호	재산분할청구 분할액	위자료	파탄 책임	주부상태	재산분할비율 판결시 고려되는 요소
91ㄴ4431	5,000만원/ 50%	-	여	삼성전자 주식회사 판촉사원	사실관계, 분할대상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 쌍방의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 등
92르2370	700만원/ 25%	500만원	남	식당 종업원	사건의 사정, 사실혼의 기간, 그동안의 생활정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사들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상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쌍방이 협력한 정도, 명의관계 및 가액,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
92르1803	2억원/ 25%	3,000만원	남	전업주부	여러 가지 참작사유, 혼인생활의 기간, 그동안의 생활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상태, 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쌍방이 협력한 정도 등
93므1584	9,000만원/ 50%에 약간 미달	3,000만원	남	회사원	당사자 나이,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93브12	3억2,000만원/ 41%	-	여	전업주부 (슈퍼운영)	재산분할 대상재산의 형성경위, 혼인의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황, 이혼 후 청구인과 상대방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등
94르1593	1억5,000만원/ 40%	-	-	전업주부 (부업)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의 원·피고의 기여도, 원·피고의 각 연령, 가족관계, 혼인기간, 혼인의 파탄 경위, 현재의 재산상태와 장래의 예상수입 정도, 원고의 사건본인의 양육책임 등
94르2299	400만원/ 18%	400만원	남	전업주부 (부업)	아들은 남편이 양육하는 점, 재산을 취득하는데 원고가 기여한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94르2565	9,000만원/ 33%	2,000만원	남	전업주부 (축사경영)	재산의 형성경위, 혼인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황, 이혼 이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94르2084	4억원/ 50%	2,500만원	남	전업주부	가사 잘 돌보면서 내조 충실, 부동산 매수 강력히 권유, 혼인계속기간, 이혼경위, 당사자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정도, 가정생활에서의 기여정도, 이혼 후 쌍방의 생활능력,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조달경위, 각 부동산의 시가상승 정도
96드27609	35%	2,000만원	남,여	생선장사	혼인계속기간, 이혼경위, 당사자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 정도, 기타 제반사정
97드2994	3,000만원/ 30%/ +채무액의 70%	-	여	전업주부	혼인계속기간, 이혼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협력정도, 이혼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기타여러사정
98므213	25%	2,000만원	남,여	전업주부	원·피고는 혼인생활 중 별다른 재산을 모으지 못함, 피고의 순자산 중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피고의 아버지 도움으로 구입
2000드합 1440	5,000만원/ 21%	2,000만원	남	전업주부	혼인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연령, 재산상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장래의 예상수입 등
2000드합 1914	3,000만원/ 33%에 약간 미달	3,000만원	남	법률사무소 직원	연령, 재산정도, 혼인 파탄경위, 혼인 계속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등
2000드단 24736	2,400만원/ 30%	1,500만원	남	파출부	혼인 계속기간, 이혼 경위, 연령, 재산상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2000드단 67108	3,600만원/ 약40%	2,000만원	남	청소부, 식당종업원	재산에 있어서의 기여도, 이혼 후 생활관계 및 능력, 재산 취득 과정에서의 채무부담 등

이와 같이 전업주부형의 경우 그 기여도의 인정 비율이 맞벌이형이나 가업협력형보다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주부의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 정도나 가사 노동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문숙재, 정영금, 1993),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재판 실무에 사용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독일의 잉여청산제는 재산분할비율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즉 각 배우자는 당초재산과 종국재산을 계산하고 종국재산이 당초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로 간주하여 더 많은 잉여를 취득한 일방 배우자에게 타방 배우자가 그 잉여 차액의 반을 청구함으로써 재산을 분할한다(조미향, 1990; 민유숙, 1993; 이화숙, 1990). 이러한 재산분할방법은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노동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평등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공유제와 별산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장 발전된 재산분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잉여분을 공평하게 취득하게 되는 방법으로써, 모든 형태의 노동기여를 공정하게 인정받는 형태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시행이후 주부의 노동가치 평가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판례의 문제점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가치있는 노동이므로 이혼시 재산이 균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가치론적 측면에서만 주로 언급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산의 분할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부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또한 재산 분할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판사의 재판상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 인정에 관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여성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헌법상 규정된 양성 평등 이념의 구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부부의 노동분담을 산정

본 연구는 가정내 남편과 아내의 총노동분담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평균 총노동시간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⁸⁾ <표 17>은 기혼남성 집단과 기혼여성 집단의 연령별 총노동시간을 분석한 것으로, 직업유형에 따라 총노동시간이 차이가 있으며 같은 직업이라도 성별에 따라 총노동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10대의 표본수가 매우 적어 20대와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로 구분되는 직업 유형별로 남성의 직업에 여성의 직업을 대응시켜 16개의 조합(남성직업 : 여성직업)이 성립되며, 이 중 논리상 불가능한 조합(한 배우자가 임금근로자나 미취업자인데 다른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두 배우자 모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이 제외된 최종 11개의 직업조합이 분석 대상에 사용된다.

<표 17> 연령별 총노동시간

(단위: 시간)

구분	연령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F값)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N	M	D	
남성	임금근로자	1,041	9.20	B	4,564	8.96	B	3,443	8.88	B	1,892	8.49	B	595	8.48	C	36	7.79	C	11,571
	고용주및자영업자	169	8.68	B	2,040	8.96	B	2,662	8.55	B	1,975	8.03	B	1,498	7.47	D	470	6.46	D	8,814
	무급가족종사자	42	7.27	C	66	7.78	C	84	6.41	C	56	6.27	C	100	5.62	E	104	5.13	E	452
	미취업자	98	2.24	D	413	2.69	D	487	2.18	D	776	1.97	D	1,199	1.99	F	808	1.25	F	3,781
여성	임금근로자	764	10.00	A	2,382	10.31	A	1,919	10.56	A	934	10.57	A	316	10.53	A	36	10.93	A	6,351
	고용주및자영업자	130	9.98	A	814	10.46	A	944	10.68	A	462	10.44	A	226	10.37	A	50	8.91	B	2,626
	무급가족종사자	254	10.56	A	1,123	10.55	A	1,322	10.49	A	1,067	10.09	A	900	9.65	B	178	8.58	B	4,844
	미취업자	2,166	7.63	C	3,966	7.63	C	2,502	6.55	C	1,788	6.22	C	1,107	5.76	E	438	4.54	E	11,967
계		4,664		15,368		13,363		8,950		5,941		2,120							50,406	
F값		F=124.73***		F=428.60***		F=596.36***		F=603.00***		F=614.73***		F=289.17***								

***p < .001

8) 가정내 남편과 아내의 노동분담을 측정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다른 가족원이나 가족외의 타인 존재는 제외되고 단지 남편과 아내의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비율을 통해 노동분담을 산정한다. 물론 노동시간 변수는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 측정되었을 뿐, 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각자의 일에 대한 생산성이 다르고, 같은 일이라 하여도 가정생활주기 및 기타 가정의 특성에 따라 한 가정내에서 그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노동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연령별 총노동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내 남편과 아내의 노동분담율을 측정
 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측정치는 노동 형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직
 업 조합을 구성하고 각 직업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총노동시간 합을
 전체로 보고, 남성과 여성 각각의 총노동시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
 산하여 산출되었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연령대는 같다고 전제하였다. 만약 연
 령대가 서로 다르다면 위의 값과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연령대에 따라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그 개인이 속한 연령대의
 값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표 18> 가정내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 비율 : 연령별 분석

(단위: %)

구분		연령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임금 근로자 남성	임금근로자여성		48 : 52	46 : 54	46 : 54	45 : 55	45 : 55	42 : 58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48 : 52	46 : 54	45 : 55	45 : 55	45 : 55	47 : 53
	미취업여성		55 : 45	55 : 45	59 : 41	59 : 41	61 : 39	65 : 35
고용주 및 자영업 남성	임금근로자여성		46 : 54	46 : 54	45 : 55	43 : 57	42 : 58	37 : 63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47 : 53	46 : 54	44 : 56	43 : 57	42 : 58	42 : 58
	무급가족종사자여성		45 : 55	46 : 54	45 : 55	44 : 56	44 : 56	43 : 57
	미취업여성		53 : 47	55 : 45	58 : 42	57 : 43	58 : 42	61 : 39
무급가족 종사자 남성	자영업여성		42 : 58	43 : 57	38 : 62	38 : 62	35 : 65	37 : 63
미취업 남성	임금근로자여성		13 : 87	13 : 87	11 : 89	10 : 90	13 : 87	8 : 92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13 : 87	12 : 88	11 : 89	10 : 90	13 : 87	10 : 90
	미취업여성		16 : 84	17 : 83	17 : 83	17 : 83	22 : 78	19 : 81

<표 18>에서 제시된 수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균
 적으로 남성은 약 46%, 여성은 약 54%의 비율로, 그리고 자영업 남성과 무급
 가족종사여성인 가업협력형 가정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46%, 여성은

약 54%의 비율로 노동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55%, 여성은 약 45%의 비율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총노동시간을 살펴본 것으로서 가정내의 개인에 따라 그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제시된 이러한 비율을 가정하는 것은 법적용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임금근로자남성 대 미취업여성, 고용주 및 자영업남성 대 미취업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분담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모두 미취업인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의 노동분담율은 최소 약 52%의 비율에서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여 최대 65%정도의 분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대에 따른 분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한 연령대의 상황으로 혼인기간 전반의 총노동시간을 유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가 이혼당시에는 전업주부의 상태였지만 과거에는 직업노동에 종사했을 경우, 현재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동을 분담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취업남성의 경우 노동분담율은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분담율은 최소 약 10%에서 최대 약 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미취업자라 해도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총노동시간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취업여성을 단순한 무직자로 간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표 18>은 집단 평균이 사용된 것이므로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한 가정의 노동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위의 논의들은 개별 가정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 중 노동을 통한 기여라는 한 요소만을 고려한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서 청산적 요소 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면⁹⁾ 혼인기간동안 시장노동경험과 기회가 단절되어 이혼 후 노동시장진입시 불이익을 받게되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위의 노동분담율인 40-47%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양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대체로 약 18%에서 30%이하이며,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

9)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혼인 중의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능력이 없는 다른 배우자 부양이라는 부양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 50%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 판결시에는 파탄의 책임 및 경위, 여러 가지 참작사유, 직업, 수입 등 개별 가정의 특성에 따른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비율과 부양적 요소, 그리고 개별 가정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보다는 한 가정의 잉여를 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취업여성은 취업남성에 비하여 노동분담율이 더 높으며,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현재의 18-30%는 그 노동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합당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노동시간을 통한 노동분담율을 고려할 때, 실제 노동에 대한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독일의 잉여청산제가 가장 합리적이다. 잉여청산제란 각 배우자의 잉여를 계산하고 그 차액을 반분하여 청구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소유 명의가 대부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잉여액의 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방법은 혼인기간이라는 변수도 함께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⁰⁾

그러나 독일의 잉여청산제 적용시 같은 노동시간이라 하여도 부부간의 임금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반분할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잉여청산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은 공평하다는 평등설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구조적으로 남성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율을 적용받으므로 임금율 적용시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제도는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남성에게 불리한 해결방법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독일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를 남성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있다(조미향, 1990). 따라서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잉여청산

10) 현재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이므로 부유한 일방배우자와 결혼한 타방배우자가 짧은 기간의 혼인생활후 이혼하여 고액의 재산을 얻는 경우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녀양육 및 기타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인 시간자료를 사용하여,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포함된 총노동시간 측정을 통해 노동분담율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한 가정내의 잉여를 반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객관적인 노동시간 자료를 근거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해나가는 분석과정은 실제 재산분할판결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의 잉여청산제를 적용한 잉여반분액 산정과정

<식 나-1>은 독일의 잉여청산제 원칙을 적용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각자의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및 잉여를 반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잉여가 적은 한 배우자는 잉여가 많은 다른 배우자에게 잉여 차액의 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Y' = | (A - A' - B) - (A - A' - B)' | \times \frac{1}{2} \quad \langle \text{식. 나-1} \rangle$$

Y' : 잉여 차액의 반분액

(A-A'-B) : 일방 배우자의 잉여액

(A-A'-B)' : 타방 배우자의 잉여액

A : 종국재산(연금, 퇴직금 및 보험 포함)

A' : 당초재산

B :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이를 산정하기 위한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각 배우자의 잉여를 계산하는 것이다. 먼저, 종국재산(A)은 이혼시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다. 총자산과 총부채 및 순자산의 측정방법은 <표 19>에

제시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배우자는 자신 소유명의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각자 자신 명의의 재산을 산정하고, 명의가 공동소유인 경우 각 배우자는 재산액의 반을 종국재산에 포함시킨다. 이 때, 이혼시의 자산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자산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즉 다른 배우자의 동의없이 재산을 고의적으로 무상 출연한 경우와 재산을 낭비한 경우는 이 방법을 통해 재산의 감소가 생기기 바로 전 시점의 재산가치를 산정한다. 이러한 종국재산에는 이미 수령한 연금 및 퇴직금, 보험금도 함께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 및 퇴직금, 보험금은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자산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표 19> 자산 및 부채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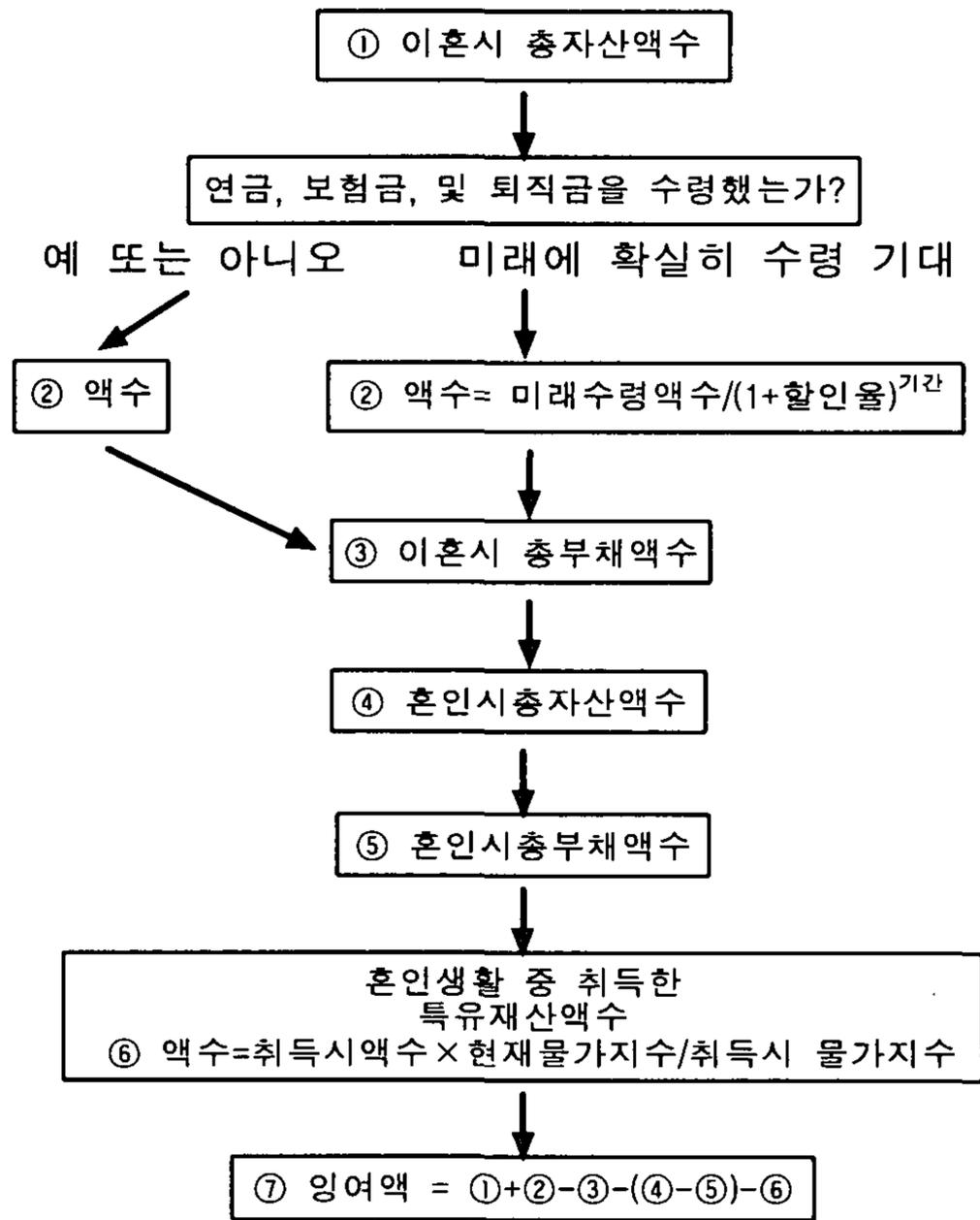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자 산	금융 자산	예금	은행 요구불 예금+은행 저축성 예금+투자신탁, 증권회사의 각종 예금+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의 각종 예금+신용협동조합(새마을 금고 및 마을금고)의 각종 예금+상호신용금고의 각종 예금+우체국의 각종 예금+농, 수, 축협동조합의 각종 예금+기타
		주식	주식 보유액수
		채권	국공채+회사채
		보험	생명보험 (월평균 불입액·불입횟수)+교육보험(월평균 불입액·불입횟수)+연금보험(월평균 불입액·불입횟수)+생명+연금보험(월평균 불입액·불입횟수)+기타(월평균 불입액·불입횟수)
		계	수령안했을 경우(매월불입액·불입횟수)+수령했을 경우 다른 자산의 형태로 이전되지 않은 금액
	사채	사채에 대하여 빌려준 이자+(사채에 대하여 빌려준 이자·사채액)	
실물 자산	부동산	토지(임야 포함)+주택(현거주주택)+주택(현거주주택 제외)+상업용 건물(상가, 빌딩 등)	
부채	금융기관부채	은행의 부채잔액+보험회사의 부채잔액+기타금융기관의 부채잔액	
	사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자율)	
	비금융기관 부채	부채잔액	
	월부 및 외상부채	월부+외상매입금	

다음으로 당초재산(A')을 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혼인시의 총자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산정한다. 혼인시의 순자산액은 화폐가치의 하락 및 상승으로 인한 과소 및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의 물가지수를 100이라 할 때 이혼시의 물가지수가 120이고 혼인시의 물가지수가 80이라면, 분할대상재산을 혼인시의 물가지수 80으로 나누고 이혼시의 물가지수 120을 곱하여 그 자산의 액수를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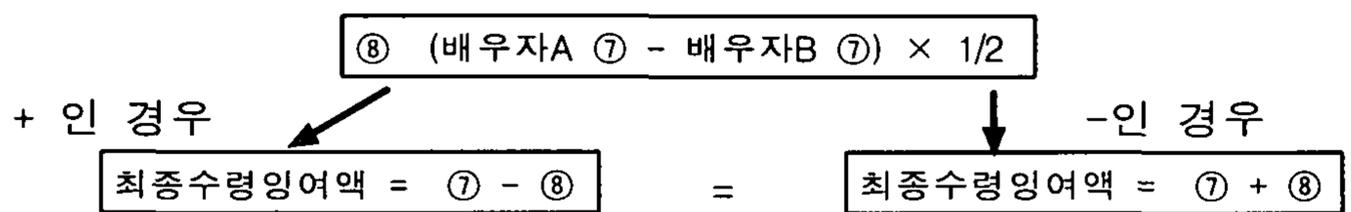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종국재산에서 당초재산을 차감한 후 각자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차감한다(A-A'-B).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B)은 명실공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여된 특유재산이나 일방배우자의 투자나 노동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 이익의 훼손의 보상으로서 부여된 재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산 역시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이혼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이유는 이러한 재산 자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러한 재산의 가치가 상승된 잉여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배우자는 종국재산에서 당초재산을 차감하고 다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공제하게 되면 취득한 모든 잉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방 배우자의 청구권과 청구액을 계산하는 단계로서, 두 배우자의 잉여를 비교하여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차감한 뒤 잉여가 적은 배우자가 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그 차액의 반(Y')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분할액을 산정한다면 다른 배우자의 노동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자산은 자신에게 귀속되고, 혼인생활 과정 중에 발생한 자산과 잉여를 반분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의 <그림 5>는 위의 과정을 도식화한 결과이다.

1 단계 : 배우자 A와 배우자 B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잉여액을 계산한다.



2단계 : 각 배우자의 잉여액을 비교한다.



< 그림 5 > 부부재산의 잉여반분액 산정 과정

다. 국민연금과 주부의 연금수급권

1) 실태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실시된 이래 2001년 현재 1,600여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전국민 연금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 연금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적용제외자'로 규정된 18세미만 60세 이상인 자, 타 공적 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수급권자,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자,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포함) 등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주부의 경우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는 '무직자'로 간주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 생산성을 인정하여 주부의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에서 본다면 이러한 대우는 부당하다.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생활비 공동 부담의 원칙"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부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주부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관련법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국민연금에서 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긴 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홀로 되는 기간이 훨씬 길고, 따라서 여성의 노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¹¹⁾는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제도에서 주부를 무직자로 간주하여 제외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전업주부는 자신의 명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11) 통계청이 2001년 7월 발표한 '1999년 생명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99년을 기준으로 남자가 71.7세, 여자는 79.2세로 약 7.5년의 차이가 난다. 또한 2000년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3세 여자는 1.6세가 늘어났으며 남자와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의 차는 약 2.8세이다(통계청, 2000년 「인구동태통계연보」). 이는 여성이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대략 10년 정도 홀로 노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없으며 가입할 필요도 없지만, 가입하길 원한다면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이런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가 산정은 중위수 표준소득월액 즉, 45등급의 중간 정도인 22등급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납부 보험료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산정시 타가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업주부의 노동력의 가치나 생산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22등급의 평가는 편의상의 이유와 보험료 하락 방지의 이유에 기인한다. 또한 무소득 배우자, 즉,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가급연금액은 연 15만원(월 평균 12,500원 정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가족수당적 성격이 강하다. 즉 가급연금액은 연금수급권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무보수 배우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현재의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남성을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비록 임금노동에 여성의 참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이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 참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연금혜택에서 불리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득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는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에게는 연금수급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현재 전업주부가 수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연금수혜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어 받게 되는)도 액수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여성의 노후 생활의 빈곤현상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사랑, 봉사, 헌신의 차원에서 당연하게 여기며,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을 가정내 '주부'라는 명목으로 봉사하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축소 평가하고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인 보상체계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주부의 연금권 확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부의 가정내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표준소득월액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각 임금적용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국민연금에서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45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본 결과는 <표 20>과 같다. 기혼유배우자 미취업여성집단인 전업주부의 경우, 여성의 임금을 전문가대체비용법, 종합적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으로 적용하여 보았을 때, 각각 842,293원, 1,372,788원, 903,803원, 1,046,573원이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1,198,520원, 1,530,404원, 1,092,129원, 1,323,774원으로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임의가입자의 등급인 22등급을 모든 임의가입자에게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함을 보여준다.

< 표 20 >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등급
(단위: 원)

방법	분류	전문가 대체비용법	종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방법 A	월 가사노동 가치평가	842,293	2인대체: 1,372,788	1,046,573
			1인대체: 903,803	
	표준소득월액 등급	20등급	27등급	23등급
			21등급	
방법 C	월 가사노동 가치평가	1,198,520	1,530,404	1,323,774
			1,092,129	
	표준소득월액 등급	25등급	29등급	26등급
			23등급	

* 방법A : 여성임금을 적용

방법C : 평균 임금률 (여성임금률+남성임금률)/2 적용

가사노동가치를 반영하여 주부에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법 A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전문가대체비용법의 경우, 월 42,500원, 종합적 대체비용법의 경우

월 69,000원, 46,000원이며, 기회비용법은 월 53,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방법B의 경우에는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적용하게 되면 월 60,5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종합적 대체비용법의 경우 월 78,000원, 53,000원이며, 기회비용법은 월 64,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01년 7월부터 도시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표준소득월액의 4%에서 5%로 인상하였기 때문으로, 2001년부터 매년 보험료를 1% 씩 상향조정하여 2005년 7월부터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이 9%를 적용받는다¹²⁾. 이러한 연금보험료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가입자간의 보험료율 부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임의가입자인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상향조정은 자영업자들과 사업장가입자들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이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가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강제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전업주부의 실질 화폐소득이 없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결국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으로 가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그 노동의 시간과 가치는 임금노동자의 노동과 다르지 않지만 노후보장을 받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실시된 보완적인 제도가 분할연금제도이다.

3) 분할연금제도의 적용방안

①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는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을 경우, 이혼한 여성에게도 분할연금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2.7%의 여성이 일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 여성의 연금수급 기회를 넓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이혼시 받게 되는 분할연금은 재산형성에의 기여에 초점

12)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근로자 역시 4.5%만을 부담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9%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을 맞췄다기 보다는 노후생활보장, 즉 부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5년 이상 혼인관계 후에 이혼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1/2을 받게 되지만, 재혼을 할 경우에는 재혼기간동안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도 주부는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서 맞벌이 부부(취업여성)에 대해, 이혼 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여성이 취업을 하면 발생하는 자신의 노령연금수급권과 분할연금권을 동시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분할연금권의 보험금 액수가 더 적기 때문에 분할연금권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수급권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법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제도는 청산적 성격은 제외되고 부양적인 성격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로,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분할연금을 신청하여도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두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남편이 60세에 도달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도, 이혼한 아내(전업주부)가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게다가 만약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남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은 물론 분할연금도 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분할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2001년 현재까지 단지 6명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현재 이들은 이혼한 후에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1/2씩 분할하여 매월 4만원 - 20만원씩 받고 있다. 물론 이 제도로 이혼을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만 내면 배우자와 다툼 필요 없이 간단히 연금을 탈 수 있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분할제도 도입에는 몇 가지 조건이 정해져야 한다. 첫째, 분할연금제도를 이혼시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입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문제이다. 둘째, 연금분할대상을 모든 이혼시로 할 것인지, 최소혼인기간을 설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분할제도를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미 몇몇 선진국가에서는 논의된 바 있으며, 이미 그 법적 규정이 정해져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② 분할연금제도의 외국 사례 적용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이혼시 지불받는 연금수급권분할제도(Credit Splitting)나 지속적인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할당(Assignment)되는 분할연금(Pension Sharing)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는 일찍이 1978년 1월부터 소득비례부문 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전업주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금수급권분할제도(Credit Splitting)를 도입하였다. 당시에는 혼인기간 조건이 최소 3년이었으며, 합법적으로 결혼하였던 부부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후 1987년의 법개정에서 연금수급권분할제도가 확대 실시되어 이혼을 하거나 혼인무효를 한 경우,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함께 살았으며 두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캐나다 연금공단에 적절한 서류와 함께 이혼사실을 통보하였을 경우 연금수급권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 개정에서는 지속적으로 1년간 함께 살았을 경우, 최소한 12개월을 별거하였을 경우, 그리고 자신이나 별거한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 동거인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만 하였을 경우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금수급권은 반드시 분할되어야 되는 강제규정이 되었는데,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의 법률적 이혼이나 혼인무효에 관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게 될 경우 당사자가 연금수급권 분할에 대한 권리 포기를 서명한 경우만 제외된다.

영국정부는 2000년 12월 1일,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은 물론 연금 또한 나눠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영국정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사회생활을 희생한 아내가 남편과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중 연금형성을 함께 한 공로를 인정하여 전남편 연금의 공동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시킨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내는 이혼법정에서 남편의 연금 중 일정액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으며, 이때 이혼하는 아내가 다른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느냐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달라진다. 연금은 영국인들이 노후를 꾸려가는데 가장 큰 재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브리스톨대의 가정정책학 교수인 힐러리 랜드는 '새로운 법률은 특히 재산이 많은 남편들로 하여금 이혼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혼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입증하듯이 영국의 경우, 2000년도의 이혼율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The Times, 2000년 11월).

캐나다에서는 연금수급권 분할제도(Credit Splitting)와 별개의 제도로 분할 연금제도 (Pension Sharing)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연금수급권분할제도와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은 이혼할 경우에 적용되지만¹³⁾, 캐나다의 분할연금제도는 지속적인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을 분할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의 연금분할에 관한 타협을 “할당(Assignment)”이라고 한다. 즉 할당은 지속적인 혼인관계나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가입자나 가입자의 배우자가 두 배우자의 연금을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할당제도는 부부의 은퇴연금이나 기타의 연금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전체 연금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이미 외국의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부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성부부에게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영국 등 사례를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6가지 방안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첫째, 연금분할제도를 이혼 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재산의 공유가 인정되듯이 연금의 공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최소 혼인기간을 12개월(만 1년)으로 낮추어서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이혼부부 중에서 5년 미만의 동거를 해 온 부부가 이혼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31.4%(통계청, 2000)를 차지하며, 그 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혼시 분할연금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을 모든 부부에게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캐나다의 연금수급권분할제도는 이혼 후 연금수급권을 분할하는 것으로 각자 독자적인 연금계정이 생기는 반면,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후 연금자체를 반분하여 자신이 원래 연금수급권을 갖고 있을 경우라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분할연금의 신청기간을 따로 두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분할연금에 대한 신청기간을 두는 의미가 사실상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은, 이혼 후, 신청기간이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없다. 20년 전인 1978년도에 제정된 캐나다의 연금분할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있었지만, 서면으로 두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3년 후에도 연금수급권을 분할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6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기간의 연한이 없어졌다. 1987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혼사실을 캐나다 연금관리공단에 통보만 하면, 반드시 연금수급권을 분할 받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다섯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강제 실시하되, 부부가 모두 서면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만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분할연금제도가 이혼 시 의무사항처럼 강제시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말에 시행된 분할연금제도를 2001년 5월 현재 단 6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분할연금의 수급시기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만 적용 가능하다. 그것은 가입자가 받게되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며 그 연금자체를 분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 초혼연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은 2.8년의 차이가 난다(통계청, 2000). 예를 들어, 남편이 60세가 되어도 부인이 57세라면 부인은 남편이 63세, 자신이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전에 남편이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의 혜택은 사라지게 되며, 이혼한 배우자이기에 유족연금의 혜택도 없다. 이 경우 노후보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금 그 자체를 나누지 말고 1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급권을 이혼시점에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자마자 부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계정이 생기는 것이며, 취업을 하면 그 연금수급권에 더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키워나갈 수 있고, 소득이 없을 경우, 임의가입자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4) 주부의 분할연금액 산정

주부에게 할당되는 분할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식. 다-1>은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으로,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해서 구한다.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개인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가급연금액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부가급여로 현재 배우자 연 150,000원, 부모및 자녀 1인당 연 100,000원이 지급된다.

$$\begin{aligned} \text{연금액} &= \text{기초연금액} + \text{가급연금액} \\ &= 1.8(A+B) \times (1+0.05n/12) + \alpha \end{aligned} \quad \langle \text{식. 다-1} \rangle$$

1.8 : 가입기간 20년(240개월)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A :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0.05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연수마다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율(5%)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제도가 이혼 시에만 해당 되도록 한정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혼인이 지속되는 중에도 주부의 명의로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이혼했을 경우와 혼인이 지속되는 경우, 두 경우 모두에 대한 분할연금액 산정식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식 다-1>을 토대로 주부가 이혼했을 경우 분할연금액의 산정과정을 도출하여 보면 <식 다-2>와 같다. 여기서 이혼한 배우자의 가급연금액을 제외한 기본연금액만을 분할하여 분할연금액을 산출하였다. 이는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에게 연 15만원, 부모나 자녀에게 연 10만원이 지급되지만, 2명 이상에 대한 가급연금액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가급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자녀나 부모에 대한 것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이다.

$$\text{이혼시 분할수급권} = \left(P \times \frac{T-M}{T} \right) + \left\{ \left(P' \times \frac{M}{T'} \right) \times \frac{1}{2} \right\} \quad \langle \text{식. 다-2} \rangle$$

T :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T' :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P :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P' :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M : 총 혼인기간월수

<식. 다-2>는 이혼시 분할수급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혼인 전에 자신이 쌓은 연금수급권에 혼인기간동안 취득한 예상연금수급권을 반분하여 더한 값을 구한다. 혼인기간동안 전업주부가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불입한 연금액의 비율을 구하여 이를 1/2으로 나눈다. 그 후, 이 값에 혼전에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더해 주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도입하게 되면,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 전에 고용경험이 있다면 발생하는 연금권에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더하여 그 연금수급권을 주부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만약 이혼 후 취업을 하면 그 연금수급권에 더하여 연금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재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라도 자신의 계정에 연금수급권이 쌓여 있으므로 그 수급권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지속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혼인기간 중에 생성된 배우자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모두 합하여 반으로 나누고, 그 값을 혼인 전에 자신이 얻은 연금수급권에 더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식은 <식. 다-3>과 같다.

$$\text{혼인중 분할연금액} = \left(P \times \frac{T-M}{T} \right) + \left[\left\{ \left(P \times \frac{M}{T} \right) + \left(P' \times \frac{M}{T'} \right) \right\} \times \frac{1}{2} \right] \quad \langle \text{식. 다-3} \rangle$$

T :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T' :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P :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P' :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times (1+0.05n/12)$
 M : 총 혼인기간월수

물론 혼인기간 중 받게 되는 연금액을 굳이 나누어 지급 받을 이유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여 주부 자신의 이름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식. 다-3>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적용할 수 있다.

IV. 결과 및 제언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국민계정체계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계정체계에 반영한 결과,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일 평균 총 가사노동 시간은 기혼의 유배우자 미취업 여성(여성 III집단)이 6.6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남성 III집단)이 1.18시간으로 다른 남성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었다.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 행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식생활 영역에서의 시간 소비량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생활, 의생활, 가족 보살피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의 유배우자 미취업여성집단(여성 III집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식생활(2.43시간), 가족보살피기(1.62시간), 주생활(0.98시간), 의생활(0.72시간), 가정관리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취업여부보다는 배우자유무에 의해서 가사노동 시간 사용량이 차이가 나며, 기혼여성의 경우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과 대 GDP 비율의 산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간사용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법인 전문가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그리고 기회비용법을 통해 가치평가액을 추정하였다. 평가방법별 월 평균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적합한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대체법
 - 소 분류별 가사노동 (시간) × 대체직종의 임금율 (원) × 30.4 (일) × 인구수 (천명)
- 종합적 대체법
 - 2인 대체 경우,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가사 및 관련 조력원 등의 임금률(원)+종합관리자 임금률(원)] / 2 × 30.4 (일) × 인구수 (천명)
 - 1인 대체 경우,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대인 및 보호서비스 관리자의 임금률 (원) × 30.4 (일) × 인구수(천명)
- 기회비용법
 - 혼인상태별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6,509 (원)(전 직종 평균임금율) × 30.4 (일) × 인구수 (천명)
 - 각 연령별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각 연령별 평균 임금율 (원) × 30.4 (일) × 인구수 (천명)

- 전문가 대체법의 경우, 가사노동 평가를 위한 행동영역의 분류는 해당 가사노동활동이 대체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가 가능한지(제 3자 기준) 여부에 근거하여 유형 I과 유형II로 나누어 대체직종을 선정하였다. 유형 I에 속하는 주로 가정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단순작업으로, 그리고 유형 II에 속하는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활동은 유사한 해당 직종으로 대체하였다.

- 종합적 대체법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1인 대체법과 2인 대체법을 모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1인 대체법의 경우, GNP와의 비교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 공식적인 임금률이 제시되는 가사근로자(51211)를 대체직으로 선정하였으며, 2인 대체법은 가사노동의 영역이 크게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을 각각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913)과 종합관리자(13)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두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임금률의 적용에서만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과 종합관리자의 시간당 임금률을 합한 후, 2로 나눔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여성근로자 임금률을 적용하였는데,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차가 결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동일하게 여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적용(방법 A)하거나, 여성은 여성근로자의 임금률을 남성은 남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적용(방법 B)하였고, 또한 여성과 남성 각각의 임금율을 합한 후 2로 나누고 이 평균 임금율을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방법 C)시키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특히 기회비용법의 경우, 학력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능력의 차이는 배제하고, 연령을 고려한 임금율을 적용하였다. 모든 임금률은 소득세 공제전 실제 노동시간량에 근거하였다.

- 여성과 남성 집단에 따른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는 여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미취업 집단(여성 III집단)의 가치액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남성 III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별로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방식이 가장 높게, 그리고 1인 대체법이 가장 낮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평가방법 적용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임금을 적용상의 문제와 대체직 선정으로 인해 과소,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어떠한 대체직이 선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종합적 대체법의 경우 '1인 대체와 2인 대체방식 중 더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의 문제, 그리고 기회비용법을 비롯한 모든 평가방법은 '어떠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적용 임금을 선택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해온 문제이다. 물론 대부분 선행연구들의 경우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여성근로자 임금률의 선택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그 제도적 반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기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평가방식과 적용 임금률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나, 대체로 약 138조에서 약 2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액이 가장 높게 산정된 것은 종합적 대체법 중 2인 대체법(방법C)으로, 전체 GDP의 47.8% 수준에 해당하는 약 228조이었다. 한편 가장 낮은 평가액은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법(방법A)으로, 전체 GDP의 28.2%에 해당하는 약 134조에 이른다. 이러한 평가액은 우리나라 GDP(약 476,597십억원)의 대략 28%-48% 수준이었다. 이는 최저 34%에서 최고 69%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36%-52%로 산정된 김정희(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와 평균 임금을 사용한 방법(방법 C)을 제외하고는 30%-37%로 산정된 김태홍(2001)의 연구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 차이는 각 연구들의 조사대상과 평가방법, 적용된 임금률 및 가사노동 활동에 포함된 활동영역의 차이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수행될 생활시간조사내용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제안할 수 있다.

- 첫째,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를 토대로 관련된 기초자료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간조사와 함께 임금조사나 직종조사의 조사시기나 조사내용이 상이한 이유로 인해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상의 한계가 지적되므로, 관련된 공식적 통계자료의 통합 체계가 요구된다.
- 둘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체직의 선정과 임금률 적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그 제도적 반영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노동이 동일한 기준, 즉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C(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합하여 2로 나누어 사용하는 평균임금률 적용)의 유용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셋째, 다양한 정책적용에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측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모든 연령층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기보다는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임금시장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노동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무급 가사노동의 숙련도 역시 결혼년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객관화된 지표로서 임금율의 적용시 결혼지속년수를

근속년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연평균 임금상승율을 가산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임금을 및 인구수의 프로그램 적용시 매해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근거해 새로운 DATA BASE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넷째, 우리나라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렇게 무급노동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GNP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경제체계와 법체계에 적용, 시행가능한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소득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무급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각 정책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주부의 지위개선 방향

사보험제도, 재산분할청구권, 국민연금 수급권 등 정책별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반영하고 주부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평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제시한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보험제도

- 현재 사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기준들이 전업주부들에게 부적합함이 검증되었으므로, 대체노동력 고용비설에 근거한 종합적 대체법으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대체직업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5.92시간으로 조사되었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임금이 적용되었다.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을 성별, 가사노동영역별, 요일별로 살펴본 결과,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는 요일별 차이는 검증되었으나 평일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고, 이들의 절대적인 시간량을 남성기혼집단들과 비교한 결과, 월등히 많은 가사노동시간량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과 수행은 여성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전업주부의 경우, 사보험사에서 22일을 월 근무일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할 수 있는 기준 26일로 대체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월 근무일수를 26일로 대체한 결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를 통한 월 소득액수는 임금적용방식에 따라 약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 사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정년년한은 무직자로 간주하여 60세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의 적합성여부를 검증한 결과,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50세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노동시간량이 전직종 1일 평균 노동시간량과 대체직업으로 선정된 직업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노동시간량과 비교하여 볼 때, 70세 이상이 되어야 노동시간량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의 60세 정년년한 기준은 부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70세를 정년년한으로 기준하기에도 사회적인 수용에 있어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농업종사자의 노동과 가사노동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65세를 정년년한으로 최종 제시하였다.

-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여성의 경우 피해자의 직업이 있는지 그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나누게 되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로 산정과정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취업주부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신의 직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월 소득과 정년년한을 기준으로 사망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 혹은 후유장해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프로그램 순서를 계획하였으며, 전업주부라고 응

답한 경우는, 피해자의 월 소득 산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산정된 시간당 임금,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 월 근무일수 26일, 정년년한 65세를 기준하여 사망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 후유장애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 되도록 프로그램 순서를 계획하였다. 이 때 시간당 임금과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자료분석 자료가 1999년도를 기준하여 산정되었으므로 매 해 그 해의 시간당 임금 혹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통계청에서는 매 5년마다 전국민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토대로 5년마다 한번씩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 재산분할청구권

-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총합한 총노동시간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 유형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총노동시간 산정을 토대로 가정내 부부의 노동분담율을 측정한 결과, 임금근로자 남성과 비취업여성, 자영업 남성과 비취업여성의 조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여성의 노동분담율이 남성의 노동분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를 제외한 모든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라 하여도 약 40%에서 50%미만에 달하는 노동분담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분담량은 재산분할 판결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생활 기간 중 가정내 가사노동을 통한 노동기여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혼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 판결시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여성의 실질적 노동량을 통한 한 가정내 노동분담율은 남성의 분담율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실제로 재산분할 판결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살펴볼 때, 기여가 동등하다고 판명될 경우 혼인생활 중의 잉여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독일의 잉여청산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 독일의 잉여청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 배우자가 잉여를 반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각 배우자는 종국재산에서 당초재산을 차감한 뒤 여기서 산출된 잉여액을 서로 비교한 뒤 잉여 차액을 계산한다. 이 때 잉여가 적은 배우자는 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잉여 차액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의 잉여를 공평하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부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 방법을 통한 재산청산은 실제 재산분할 판결시 실제 적용가능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국민연금제도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통한 표준소득월액 등급은 임금적용방식에 따라 20등급(약 84만원/월)에서부터 29등급(약 150만원/월) 까지 산정되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여성의 무급노동이 남편과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 위의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분할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연금분할제도를 이혼 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과 최소혼인기간을 12개월로 할 것,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도 실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혼한 사실이 증명이

될 경우 자동시행되어야 하며 연금자체가 아닌 연금수급권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뿐만 아니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는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 이혼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자녀양육, 환자의 간호 등의 이유로 취업을 중단하고 가사노동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분할받아 자신의 연금수급권에 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제도적으로 주부의 노동력을 반영하고 주부의 경제적 능력과 자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을 제안할 수 있다.

-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보험제도, 재산분할청구권, 국민연금권에서 가사노동과 주부 노동의 인정을 위해 몇가지의 기준들을 제안하였으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기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인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실험적인 단계로 현재의 적용기준의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대체노동력 고용비설에 근거한 종합적 대체법을 사용하여 전업주부의 대체직업을 선정하고 월소득 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인 전문가 대체법이나 기회비용법 등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실제적인 평가방법이 고안될 수 있고 기준이 세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제도로 마련되고 정착 되어야 한다.

-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노동담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국민계정체계와 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요구되는 생활시간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시간자료는 무보수노동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부적인 활동분류체계를 갖춰야 하며, 전국 규모의 대단위 조사이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일된 시간조사의 틀이 마련되어 각국의 자료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간자료는 다른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산정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에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연관되어 체계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c.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1999),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관리공단(1999), 「국민연금실무편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국민연금」
- 권영준(1993). 재산분할청구의 결정기준: 영국을 중심으로. *안동대 사회과학논총*.
- 김숙자(1990).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연구* 4호, 103.
-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한국여성개발원) 3(4), 25-47.
- 김영갑(1991). 재산분할청구권. *사법논집* 22. 209-251.
- 김용하(1997),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정희(1994),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대 GNP 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수(1991).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판례월보* 253, 17-23.
-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부 · UNDP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통계연감
- _____.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 _____.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각년도.
- 동아일보 홈페이지 - <http://www.donga.com>
- 문숙재(1990). 「가정생산(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서울:신광출판사.
- _____(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문숙재, 윤소영(1996). 가사노동의 사적특성과 공적특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99-210.
- _____, _____(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_____, _____(1998).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I: 가사노동의 측정

- 을 위한 제안. 대한가정학회지 36(4), 35-48.
- _____, _____(2000). 「결혼과 노동」. 교문사.
- 문숙재, 정영금(1991a).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31-150.
- _____, _____(1991b).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3-24.
- 민유숙(1993). 재산분할의 구체적 인정범위. 재판자료 62. 401-433
- 신낙균(1997). 「주부연금권 확보의 당위성과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오옥화(1995). 재산분할청구권과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원용수(1992). 우리나라 가족법상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문제연구 31, 91-119.
- 윤소영(1998).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_____(1999). 가사노동의 정책요구 및 정책목표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31-42.
- 이계탁(2000). 우리나라 국민연금 부과방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훈(199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재산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법조 441, 61-93.
- 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6집.
- 이화숙(1990). 개정 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여성연구 8(1), 149-180.
- 임영철(1999).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따른 발전방향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무장관(제 2실)(1997). 「주부의 가사노동 소득인정기준 설정방안모색」.
- _____(1997). 「1998~2002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_____(1997). 「가사노동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
- _____(1997). 「여성백서」.

- 정연호(2000),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금(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_____ (1995). 대체비용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 정당한 가사노동가치인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 정영금, 문숙재(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여성연구* 7(4).
- 조미향(1990). 재산분할청구권1, *사법행정* 356. 80-86.
-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www.chosun.com>
- 중앙일보 홈페이지 - <http://www.joins.com>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_____.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_____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 _____ (2000), 「1999 생활시간조사」.
- 한국여성개발원(1990). 「남녀근로자 임금구조에 관한 연구」.
- _____ (1998). 「민사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가치평가 연구-가사노동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민우회(1991).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 Aelee, Shon(1998). Time use survey: A pilot study in the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Human Resource Accounts" sponsored by NSO of Korea & UNDP in Seoul, Korea(8-10 Dec. 1998). 193-218.
- Benería, L.(1992). Accounting for women's work : the progress of two decades. *World Development* 20(11). 1547-1560.
- Bryan, W. R. & Linke, C. M.(1985). Estimating the value of home work time : The impact of income tax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71-172.

- Bryant, W. K. & Wang, Yan(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7-117.
- Bryant, W. K.(1991). Economics of Housewifery. *Consumer Economics & Housing*, Cornell University.
- CANADA Pension Plan - <http://www.hrhc-drhc.gc.ca>
- Chadeau, A.(1985). Measuring Household Activitie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The Review of Income Wealth*, 31(3), 237-253.
- Chiswick, C. U.(1982). The value of a housewife's tim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3).
- Dixon-Mueller, R. & Anker, R.(1988). Assessing wpmen's economic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Background Papers for Training in Population,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Planning* (No. 6). ILO(Geneva).
- Ericta, C. N.(1998). Measuring women's and men's contribution to the economy: Philippine framework.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Human Resource Accounts" sponsored by NSO of Korea & UNDP in Seoul, Korea(8-10 Dec. 1998). 181-190.
- Ferber, M. A. & Birnbaum, B. G. (1980), Homework: Priceless or Valueles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87-400.
- Goldschmidt-Clermont, L. & Pagnossin-Aligisakis(1995). *Measures of Unrecorded Economic Activities in Fourteen Countrie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orking paper, New York.
- Mikami, H(1999). Time Use Survey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ime Use Seminar, Ahmedabad, India, 7-10 December 1999.
- OECD National Accounts(2000), "Household production in OECD Countries:Data sources and measurement method",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s.
- Pension and Welfare Benefits Administration -
<http://www.dol.gov/dol/pwba>

PensionGuide.co.uk - <http://www.pensionguide.gov.uk>

Shivakumar, Sujai(1997). Valuing women's work : theoretical constraints in determining the worth of household and other non-market ac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UNDP/UNSD/UNIFEM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in Seoul, Republic of Korea(28-30 May, 1997).

Sousa-Poza, A(1999). Assigning Monetary Values to Unpaid Labour Using Input Based Approaches: The Swiss Case, Proceeding of the 52nd ISI Session. Finland Statistics.
<http://www.isi.fi/isi99/proceedings>

The Times UK - <http://www.thetimes.co.uk>

Zick, C. D. & Bryant, W. K.(1990). Shadow wage assessments of the value of home production: Patterns from the 1970's. *Lifestyles* 11, 143-160.

부 록

◆구체적인 가사노동 가치평가 산정 내용

1. 전문가 대체법에 의한 산정

A. 여성 근로자 임금을 적용

1) 미혼 여성의 경우

$$3,714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12,906 \text{ (원)}$$

$$112,906 \text{ (월평균가치/원)} \times 4,423 \text{ (천명)} = 499,383,23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2,008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669,043 \text{ (원)}$$

$$669,04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text{ (천명)} = 3,628,889,23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27,707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842,293 \text{ (원)}$$

$$842,29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text{ (천명)} = 4,878,561,05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10,950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332,880 \text{ (원)}$$

$$332,88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text{ (천명)} = 348,525,36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15,300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465,120 \text{ (원)}$$

$$465,12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text{ (천명)} = 812,564,64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3,251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98,830 \text{ (원)}$$

$$98,83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293 \text{ (천명)} = 523,107,19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3,932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19,533 \text{ (원)}$$

$$119,53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1,462 \text{ (천명)} = 1,370,087,25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5,726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74,070 \text{ (원)}$$

$$174,07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6 \text{ (천명)} = 100,264,32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2,161,382,392,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2,161,382,392,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45,936,588,704,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45,936,588,704,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30.62 \text{ \%}$$

B. 여성은 여성근로자 임금을, 남성은 남성근로자 임금을 적용

1) 미혼 여성의 경우

$$3,714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12,906 \text{ (원)}$$

$$112,906 \text{ (월평균가치/원)} \times 4,423 \text{ (천명)} = 499,383,23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2,008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669,043 \text{ (원)}$$

$$669,04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text{ (천명)} = 3,628,889,23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27,707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842,293 \text{ (원)}$$

$$842,29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text{ (천명)} = 4,878,561,05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10,950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332,880 \text{ (원)}$$

$$332,88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text{ (천명)} = 348,525,36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15,300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465,120 \text{ (원)}$$

$$465,12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text{ (천명)} = 812,564,64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4,482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36,253 \text{ (원)}$$

$$136,25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293 \text{ (천명)} = 721,187,129,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5,553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68,811 \text{ (원)}$$

$$168,811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1,462 \text{ (천명)} = 1,934,911,68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8,074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245,450 \text{ (원)}$$

$$245,45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6 \text{ (천명)} = 141,379,20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2,965,401,537,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2,965,401,537,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55,584,818,444,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55,584,818,444,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32.64 \%$$

C. 평균 임금을 적용

1) 미혼 여성의 경우

$$5,108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55,283 \text{ (원)}$$

$$155,283 \text{ (월평균가치/원)} \times 4,423 \text{ (천명)} = 686,816,709,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6,925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818,520 \text{ (원)}$$

$$818,52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text{ (천명)} = 4,439,652,48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39,425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198,520 \text{ (원)}$$

$$1,198,520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text{ (천명)} = 6,941,827,84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13,460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409,184 \text{ (원)}$$

$$569,612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text{ (천명)} = 428,415,64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18,582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564,893 \text{ (원)}$$

$$564,89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text{ (천명)} = 986,867,72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3,867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17,557 \text{ (원)}$$

$$117,557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293 \text{ (천명)} = 622,229,201,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4,743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144,187 \text{ (원)}$$

$$144,187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1,462 \text{ (천명)} = 1,652,673,68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7,027 \text{ (1일 가사노동 가치/원)} \times 30.4 \text{ (일)} = 213,621 \text{ (원)}$$

$$269,937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6 \text{ (천명)} = 123,045,69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5,881,528,982,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5,881,528,982,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90,578,347,784,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90,578,347,784,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39.99 \%$$

2. 종합적 대체법에 의한 산정

◎ 2인 대체법

A. 여성 근로자 임금을 적용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을

$$3,207 \text{ (가사 및 관련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 10,293 \text{ (종합관리자)} / 2 = 6,750 \text{ (원)}$$

1) 미혼 여성의 경우

$$0.88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6,750 \text{ (원)} = 180,576 \text{ (원)}$$

$$180,576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4,423 \text{ (천명)} = 798,687,64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3.84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750$ (원) = $787,968$ (원)
 $787,968$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천명) = $4,273,938,432,000$ (전체월평균가치/원)
-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750$ (원) = $1,372,788$ (원)
 $1,372,788$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천명) = $7,951,188,096,000$ (전체월평균가치/원)
-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49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750$ (원) = $510,948$ (원)
 $510,948$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천명) = $534,962,556,000$ (전체월평균가치/원)
-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750$ (원) = $691,524$ (원)
 $691,524$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천명) = $1,208,092,42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 6) 미혼 남성의 경우
 0.33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750$ (원) = $67,716$ (원)
 $67,716$ (월 평균 가치/원) \times $5,293$ (천명) = $358,420,78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0.75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750$ (원) = $153,900$ (원)
 $153,900$ (월평균가치/원) \times $11,462$ (천명) = $1,764,001,800,000$ (전체월평균가치/원)
-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1.18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750$ (원) = $242,136$ (원)
 $242,136$ (월 평균 가치/원) \times 576 (천명) = $139,470,336,000$ (전체월평균가치/원)
-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7,028,762,684,000$ (원)
-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7,028,762,684,000$ (원) \times 12 (개월) = $204,345,152,208,000$ (원)
-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04,345,152,208,000$ (원) \div $476,597,600,000,000$ (99년 경상GNP) \times 100 (%)
 $= 42.88 \%$

B. 여성은 여성근로자 임금을, 남성은 남성근로자 임금을 적용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률

여성 3,207(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 10,293(종합관리자) / 2 = 6,750 (원)

남성 4,608(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 11,988(종합관리자) / 2 = 8,298 (원)

1) 미혼 여성의 경우

0.88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6,750 (원) = 180,576 (원)

180,576 (월평균 가치/원) × 4,423 (천명) = 798,687,64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3.84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6,750 (원) = 787,968 (원)

787,968 (월평균 가치/원) × 5,424 (천명) = 4,273,938,432,000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6,750 (원) = 1,372,788 (원)

1,372,788 (월평균 가치/원) × 5,792 (천명) = 7,951,188,096,000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49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6,750 (원) = 510,948 (원)

510,948 (월평균 가치/원) × 1,047 (천명) = 534,962,556,000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6,750 (원) = 691,524 (원)

691,524 (월평균 가치/원) × 1,747 (천명) = 1,208,092,42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0.33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8,298 (원) = 83,246 (원)

83,246 (월 평균 가치/원) × 5,293 (천명) = 440,621,07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0.75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8,298 (원) = 189,194 (원)

189,194 (월평균가치/원) × 11,462 (천명) = 2,168,541,62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1.18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 30.4 (일) × 8,298 (원) = 297,666 (원)

297,666 (월 평균 가치/원) × 576 (천명) = 171,455,616,000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7,547,488,082,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7,547,488,082,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210,569,856,984,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10,569,856,984,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44.18 \%$$

C. 평균 임금을 적용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을(두 대체직의 남녀임금률의 합/2 한 후, 다시 이를 합하여 나눔)
3,908(가사 및 관련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 + 11,141(종합관리자) / 2 = 7,525 (원)

1) 미혼 여성의 경우

$$0.88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201,309 \text{ (원)}$$

$$201,309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4,423 \text{ (천명)} = 890,389,707,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3.84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878,438 \text{ (원)}$$

$$878,438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text{ (천명)} = 4,764,647,71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1,530,404 \text{ (원)}$$

$$1,530,404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text{ (천명)} = 8,864,099,96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49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569,612 \text{ (원)}$$

$$569,612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text{ (천명)} = 596,383,764,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770,921 \text{ (원)}$$

$$770,921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text{ (천명)} = 1,346,798,987,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0.33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75,491 \text{ (원)}$$

$$75,491 \text{ (월 평균 가치/원)} \times 5,293 \text{ (천명)} = 399,573,863,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0.75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171,570 \text{ (원)}$$

$$171,570 \text{ (월평균가치/원)} \times 11,462 \text{ (천명)} = 1,966,535,34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1.18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7,525 \text{ (원)} = 269,937 \text{ (원)}$$

$$269,937 \text{ (월 평균 가치/원)} \times 576 \text{ (천명)} = 155,483,71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8,983,913,053,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8,983,913,053,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227,806,956,636,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227,806,956,636,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47.80 \%$$

◎ 1인 대체법

A. 여성 근로자 임금을 적용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을 - 4,444원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1) 미혼 여성의 경우

$$0.88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118,886 \text{ (원)}$$

$$118,886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4,423 \text{ (천명)} = 525,832,77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3.84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518,775 \text{ (원)}$$

$$518,775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text{ (천명)} = 2,813,835,60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903,803 \text{ (원)}$$

$$903,80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text{ (천명)} = 5,234,826,97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49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336,393 \text{ (원)}$$

$$336,393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text{ (천명)} = 352,203,471,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455,279 \text{ (원)}$$

$$455,279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text{ (천명)} = 795,372,413,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0.33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44,582 \text{ (원)}$$

$$44,582 \text{ (월 평균 가치/원)} \times 5,293 \text{ (천명)} = 235,972,52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0.75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101,323 \text{ (원)}$$

$$101,323 \text{ (월평균가치/원)} \times 11,462 \text{ (천명)} = 1,161,364,22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1.18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4,444 \text{ (원)} = 159,415 \text{ (원)}$$

$$159,415 \text{ (월 평균 가치/원)} \times 576 \text{ (천명)} = 91,823,040,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1,211,330,030,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1,211,330,030,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34,535,960,360,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34,535,960,360,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28.23 \%$$

B. 여성은 여성근로자 임금을, 남성은 남성근로자 임금을 적용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률

여성 4,444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남성 6,296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1) 미혼 여성의 경우

 0.88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4,444$ (원) = $118,886$ (원) $118,886$ (월평균 가치/원) \times $4,423$ (천명) = $525,832,77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3.84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4,444$ (원) = $518,775$ (원) $518,775$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천명) = $2,813,835,600,000$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4,444$ (원) = $903,803$ (원) $903,803$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천명) = $5,234,826,976,000$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49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4,444$ (원) = $336,393$ (원) $336,393$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천명) = $352,203,471,000$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4,444$ (원) = $455,279$ (원) $455,279$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천명) = $795,372,413,000$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0.33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296$ (원) = $63,161$ (원) $63,161$ (월 평균 가치/원) \times $5,293$ (천명) = $334,311,173,000$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0.75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296$ (원) = $143,549$ (원) $143,549$ (월평균가치/원) \times $11,462$ (천명) = $1,645,358,638,000$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1.18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일) \times $6,296$ (원) = $225,850$ (원) $225,850$ (월 평균 가치/원) \times 576 (천명) = $130,089,600,000$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1,831,929,649,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1,831,929,649,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41,983,155,788,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41,983,155,788,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29.79 \%$$

C. 평균 임금을 적용

● 가사노동의 시간당 임금을

$$4,444 \text{ (대인 및 보호서비스 여성근로자)} + 6,296 \text{ (남성근로자)} / 2 = 5,370 \text{ (원)}$$

1) 미혼 여성의 경우

$$0.88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143,658 \text{ (원)}$$

$$143,658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4,423 \text{ (천명)} = 635,399,334,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2) 기혼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3.84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626,872 \text{ (원)}$$

$$626,872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424 \text{ (천명)} = 3,400,153,72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3) 기혼 유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1,092,129 \text{ (원)}$$

$$1,092,129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5,792 \text{ (천명)} = 6,325,611,16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4) 기혼 무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

$$2.49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406,488 \text{ (원)}$$

$$406,488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047 \text{ (천명)} = 425,592,93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5) 기혼 무배우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550,146 \text{ (원)}$$

$$550,146 \text{ (월평균 가치/원)} \times 1,747 \text{ (천명)} = 961,105,06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6) 미혼 남성의 경우

$$0.33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53,872 \text{ (원)}$$

$$53,872 \text{ (월 평균 가치/원)} \times 5,293 \text{ (천명)} = 285,144,496,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7) 기혼 유배우 남성의 경우

$$0.75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122,436 \text{ (원)}$$

$$122,436 \text{ (월평균가치/원)} \times 11,462 \text{ (천명)} = 1,403,361,432,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8) 기혼 무배우 남성의 경우

$$1.18 \text{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370 \text{ (원)} = 192,633 \text{ (원)}$$

$$192,633 \text{ (월 평균 가치/원)} \times 576 \text{ (천명)} = 110,956,608,000 \text{ (전체월평균가치/원)}$$

9)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1) + \dots + 8) = 13,547,324,764,000 \text{ (원)}$$

10)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3,547,324,764,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62,567,897,168,000 \text{ (원)}$$

11)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62,567,897,168,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34.11 \%$$

3. 기회비용법에 의한 산정

1) 혼인상태에 의한 산정

A. 여성 근로자 임금을 적용

① 미혼 여성의 경우

$$0.88 \text{ (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146 \text{ (원)} \times 4,423 \text{ (천명)} = 608,895,798,000 \text{ (월평균가치/원)}$$

② 기혼(유배우자) 취업 여성의 경우

$$3.84 \text{ (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146 \text{ (원)} \times 5,424 \text{ (천명)} = 3,258,324,025,000 \text{ (월평균가치/원)}$$

③ 기혼(유배우자)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 \text{ (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146 \text{ (원)} \times 5,792 \text{ (천명)} = 6,061,750,214,000 \text{ (월평균가치/원)}$$

④ 기혼(무배우자) 취업 여성의 경우

$$2.49 \text{ (시간)} \times 30.4 \text{ (일)} \times 5,146 \text{ (원)} \times 1,047 \text{ (천명)} = 407,839,602,000 \text{ (월평균가치/원)}$$

- ⑤ 기혼(무배우자)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1,747(\text{천명}) = 921,013,872,000(\text{월평균가치/원})$
- ⑥ 미혼 남성의 경우
 $0.33(\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5,293(\text{천명}) = 273,249,389,000(\text{월평균가치/원})$
- ⑦ 기혼(유배우자) 남성의 경우
 $0.75(\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11,462(\text{천명}) = 1,344,822,706,000(\text{월평균가치/원})$
- ⑧ 기혼(무배우자) 남성의 경우
 $1.18(\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576(\text{천명}) = 106,328,052,000(\text{월평균가치/원})$
- ⑨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text{①} + \dots + \text{⑧} = 12,982,223,658,000 (\text{원})$
- ⑩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2,982,223,658,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 155,786,683,896,000 (\text{원})$
- ⑪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55,786,683,896,000(\text{원}) \div 476,597,600,000,000 (99\text{년 경상GNP}) \times 100 (\%)$
 $= 32.69 \%$

B. 여성은 여성근로자 임금을, 남성은 남성근로자 임금을 적용

- ① 미혼 여성의 경우
 $0.88(\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4,423(\text{천명}) = 608,895,798,000(\text{월평균가치/원})$
- ② 기혼(유배우자) 취업 여성의 경우
 $3.84(\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 (\text{원}) \times 5,424(\text{천명}) = 3,258,324,025,000(\text{월평균가치/원})$
- ③ 기혼(유배우자)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5,792(\text{천명}) = 6,061,750,214,000(\text{월평균가치/원})$
- ④ 기혼(무배우자) 취업 여성의 경우
 $2.49(\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1,047(\text{천명}) = 407,839,602,000(\text{월평균가치/원})$
- ⑤ 기혼(무배우자)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5,146(\text{원}) \times 1,747(\text{천명}) = 921,013,872,000(\text{월평균가치/원})$
- ⑥ 미혼 남성의 경우
 $0.33(\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7,871(\text{원}) \times 5,293(\text{천명}) = 417,945,188,000(\text{월평균가치/원})$

⑦ 기혼(유배우자) 남성의 경우

$$0.75(\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7,871(\text{원}) \times 11,462(\text{천명}) = 2,056,956,766,000(\text{월평균가치/원})$$

⑧ 기혼(무배우자) 남성의 경우

$$1.18(\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7,871(\text{원}) \times 576(\text{천명}) = 162,632,743,000(\text{월평균가치/원})$$

⑨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text{①} + \dots + \text{⑧} = 13,895,358,208,000 (\text{원})$$

⑩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3,895,358,208,000 (\text{원}) \times 12 (\text{개월}) = 166,744,298,496,000 (\text{원})$$

⑪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66,744,298,496,000 (\text{원}) \div 476,597,600,000,000 (99\text{년 경상GNP}) \times 100 (\%) \\ = 34.99 \%$$

C. 평균 임금을 적용

① 미혼 여성의 경우

$$0.88(\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4,423(\text{천명}) = 770,171,541,000(\text{월평균가치/원})$$

② 기혼(유배우자) 취업 여성의 경우

$$3.84(\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5,424(\text{천명}) = 4,121,343,001,000(\text{월평균가치/원})$$

③ 기혼(유배우자) 미취업 여성의 경우

$$6.69(\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5,792(\text{천명}) = 7,667,301,232,000(\text{월평균가치/원})$$

④ 기혼(무배우자) 취업 여성의 경우

$$2.49(\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1,047(\text{천명}) = 515,862,411,000(\text{월평균가치/원})$$

⑤ 기혼(무배우자) 미취업 여성의 경우

$$3.37(\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1,747(\text{천명}) = 1,164,959,054,000(\text{월평균가치/원})$$

⑥ 미혼 남성의 경우

$$0.33(\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5,293(\text{천명}) = 345,623,838,000(\text{월평균가치/원})$$

⑦ 기혼(유배우자) 남성의 경우

$$0.75(\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11,462(\text{천명}) = 1,701,020,402,000(\text{월평균가치/원})$$

⑧ 기혼(무배우자) 남성의 경우

$$1.18(\text{시간}) \times 30.4(\text{일}) \times 6,509(\text{원}) \times 576(\text{천명}) = 134,490,728,000(\text{월평균가치/원})$$

⑨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textcircled{1} + \dots + \textcircled{8} = 16,420,772,207,000 \text{ (원)}$$

⑩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6,420,772,207,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97,049,266,484,000 \text{ (원)}$$

⑪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97,049,266,484,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41.34 \%$$

2) 연령집단에 의한 산정

A. 여성 근로자 임금을 적용

① 여성경우- {각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임금율(원)×인구수(천명)}×30.4(일)

$$\{0.60 \times 3,357 \times 1,893(20\text{세} \downarrow) + 1.63 \times 4,521 \times 1,760(20-24\text{세}) + 4.67 \times 5,664 \times 2,003(25-29\text{세}) + 5.88 \times 6,755 \times 1,916(30-34\text{세}) + 5.22 \times 5,919 \times 2,112(35-39\text{세}) + 4.58 \times 5,096 \times 1,959(40-44\text{세}) + 4.23 \times 4,688 \times 1,399(45-49\text{세}) + 4.37 \times 4,490 \times 1,167(50-54\text{세}) + 4.38 \times 4,008 \times 1,097(55-59\text{세}) + 3.45 \times 4,517 \times 3,130(60\text{세 이상})\} \times 30.4 \text{ (일)} = 11,415,770,091,000 \text{ (월평균 가치/원)}$$

② 남성경우 - {각 연령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인구수(천명)}×30.4일×임금율

$$\{0.20 \times 3,357 \times 1,965(20\text{세} \downarrow) + 0.38 \times 4,521 \times 1,165(20-24\text{세}) + 0.55 \times 5,664 \times 2,035(25-29\text{세}) + 0.78 \times 6,755 \times 1,979(30-34\text{세}) + 0.68 \times 5,919 \times 2,225(35-39\text{세}) + 0.62 \times 5,096 \times 2,013(40-44\text{세}) + 0.62 \times 4,688 \times 1,436(45-49\text{세}) + 0.63 \times 4,490 \times 1,217(50-54\text{세}) + 0.78 \times 4,008 \times 1,045(55-59\text{세}) + 1.00 \times 4,517 \times 2,250(60\text{세 이상})\} \times 30.4 \text{ (일)} = 1,716,062,155,000 \text{ (월평균 가치/원)}$$

③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textcircled{1} + \textcircled{2} = 13,131,832,246,000 \text{ (원)}$$

④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3,131,832,246,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57,581,986,952,000 \text{ (원)}$$

⑤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57,581,986,952,000 \text{ (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text{ (\%)} \\ = 33.06 \%$$

B. 여성은 여성근로자 임금률, 남성은 남성근로자 임금률 적용

① 여성경우- {각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임금율(원)×인구수(천명)}×30.4(일)
 $\{0.60 \times 3,357 \times 1,893(20\text{세} \downarrow) + 1.63 \times 4,521 \times 1,760(20-24\text{세}) + 4.67 \times 5,664 \times 2,003(25-29\text{세}) + 5.88 \times 6,755 \times 1,916(30-34\text{세}) + 5.22 \times 5,919 \times 2,112(35-39\text{세}) + 4.58 \times 5,096 \times 1,959(40-44\text{세}) + 4.23 \times 4,688 \times 1,399(45-49\text{세}) + 4.37 \times 4,490 \times 1,167(50-54\text{세}) + 4.38 \times 4,008 \times 1,097(55-59\text{세}) + 3.45 \times 4,517 \times 3,130(60\text{세 이상})\} \times 30.4(\text{일}) = 11,415,770,091,000$ (월평균 가치/원)

② 남성경우 - {각 연령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인구수(천명)}×30.4일×임금율
 $\{0.20 \times 3,116 \times 1,965(20\text{세} \downarrow) + 0.38 \times 4,072 \times 1,165(20-24\text{세}) + 0.55 \times 6,000 \times 2,035(25-29\text{세}) + 0.78 \times 7,707 \times 1,979(30-34\text{세}) + 0.68 \times 9,019 \times 2,225(35-39\text{세}) + 0.62 \times 9,580 \times 2,013(40-44\text{세}) + 0.62 \times 9,543 \times 1,436(45-49\text{세}) + 0.63 \times 8,834 \times 1,217(50-54\text{세}) + 0.78 \times 7,088 \times 1,045(55-59\text{세}) + 1.00 \times 6,106 \times 2,250(60\text{세 이상})\} \times 30.4(\text{일}) = 2,493,619,949,000$ (월평균 가치/원)

③ 우리 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text{①} + \text{②} = 13,909,390,040,000 \text{ (원)}$$

④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3,909,390,040,00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66,912,680,480,000 \text{ (원)}$$

⑤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66,912,680,480,000(\text{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 \\ = 35.02 \%$$

C. 평균 임금률 적용

① 여성경우- {각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임금율(원)×인구수(천명)}×30.4(일)
 $\{0.60 \times 3,237 \times 1,893(20\text{세} \downarrow) + 1.63 \times 4,297 \times 1,760(20-24\text{세}) + 4.67 \times 5,832 \times 2,003(25-29\text{세}) + 5.88 \times 7,231 \times 1,916(30-34\text{세}) + 5.22 \times 7,469 \times 2,112(35-39\text{세}) + 4.58 \times 7,338 \times 1,959(40-44\text{세}) + 4.23 \times 7,116 \times 1,399(45-49\text{세}) + 4.37 \times 6,662 \times 1,167(50-54\text{세}) + 4.38 \times 5,548 \times 1,097(55-59\text{세}) + 3.45 \times 5,312 \times 3,130(60\text{세 이상})\} \times 30.4(\text{일}) = 13,993,340,798,200$ (월평균 가치/원)

② 남성경우 - {각 연령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인구수(천명)}×30.4일×임금율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0.20 \times 3,237 \times 1,965(20\text{세} \downarrow) + 0.38 \times 4,297 \times 1,165(20-24\text{세}) + 0.55 \times 5,832 \times 2,035(25-29\text{세}) + 0.78 \times 7,231 \times 1,979(30-34\text{세}) + 0.68 \times 7,469 \times 2,225(35-39\text{세}) + 0.62 \times 7,338 \times 2,013(40-44\text{세}) + 0.62 \times 7,116 \times 1,436(45-49\text{세}) + 0.63 \times 6,662 \times 1,217(50-54\text{세}) + 0.78 \times 5,548 \times 1,045(55-59\text{세}) + 1.00 \times 5,312 \times 2,250(60\text{세 이상})\} \times 30.4(\text{일}) = 2,104,901,482,330 \text{ (월평균 가치/원)}$$

③ 우리나라 전체 가사노동 월 가치액

$$\text{①} + \text{②} = 16,098,242,280,530 \text{ (원)}$$

④ 우리나라 전체 연 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16,098,242,280,530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 193,178,907,366,360 \text{ (원)}$$

⑤ 가사노동의 가치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

$$193,178,907,366,360(\text{원}) \div 476,597,600,000,000 \text{ (99년 경상GNP)} \times 100 (\%) \\ = 40.53 \%$$